

**FTA 시대 불법무역과 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범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llegal Trade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  
in the FTA Era : With Focus on the Customs Crime

**FTA 시대 불법무역과 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범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llegal Trade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  
in the FTA Era : With Focus on the Customs Crime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정웅

## 【요 약】

자유무역협정(FTA)이 국제경제에 있어서 커다란 조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 발효와 2006년 한-미 FTA 추진 등으로 본격적 FTA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FTA에 따른 교역규모 증가, 무역의 복잡화, 전자화 양상에 편승하여 국제거래에서 탈법무역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FTA 시대 탈법무역 위험성 증가에 대처하여 불법무역의 유형 및 실태를 분석하고 탈법무역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제도적 대응 모델이 마련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불법무역 연구를 위한 분석 틀로서 국경절차(Border Procedure) 모형을 도입하여 불법무역의 주요 범주로 관세범죄, 부정무역범죄, 마약범죄, 사회안전범죄를 설정한 뒤, 이 범주에 따라 최근의 불법무역 현황을 개관하고 이어 심층적 실태분석으로 관세범죄를 다루었으며 마지막 제도적 대응방안에서는 불법무역 대응체계 제도화의 기본구상과 불법무역 대응체계의 주요 정비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노스의 넓은 의미의 제도 개념을 원용한데 기초하여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를 “범죄대응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식적인 법규와 조직, 구조화된 절차 및 관행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본 연구가 제시한 범죄대응체계 제도화의 기본구상은 문제 발생과 쟁점의 확인(identification), 법규와 조직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 설계(institutional design), 범죄대응을 위한 절차 및 관행을 제도화하는 집행(implementation), 그리고 환류(feedback)에 의한 순환과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과정에 경찰청과 유관기관, 민간기업·시민 등 현실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조가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를 가늠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입장을 범죄대응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또 이러한 불법무역 대응체계의 기본구상 아래 주요 정비 방향으로는 법규 측면에서 관련 법규정의 명확화, 조직 측면에서 국경절차 관리기관의 통합성 추구, 대응절차에서 종합적 범죄정보시스템 구축, 이해당사자간 협력 측면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의 형성 등을 제시하였다.

# 목 차

<b>I. 서론</b>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b>II. 불법무역의 분석 틀과 범주</b> .....	9
1. 불법무역의 분석 틀 .....	9
2. 불법무역의 범주 .....	22
<b>III. FTA 시대 한국의 무역환경과 탈법위험</b> .....	26
1. 세계 FTA의 추세 .....	26
2. 한국의 FTA 추진과 탈법위험 .....	33
1) 한국의 FTA의 추진 현황 .....	33
2) FTA 추진과 탈법위험 .....	40
<b>IV. 불법무역의 일반 유형 및 실태</b> .....	44
1. 불법무역의 일반 유형 .....	44
2. 불법무역의 실태: 관세범죄 .....	56
1) 관세범의 의의 및 특징 .....	56
2) 처벌법규의 구조와 관세범의 종류 .....	58
3) 관세범죄의 실태분석 .....	76

(1) 관세사범 검거실적 .....	76
(2) 주요 검거사례 .....	80
(3) 수사사례분석 .....	81
(4) 형사판례분석 .....	87
<b>V. 경찰의 제도적 대응방안 .....</b>	<b>89</b>
1. 불법무역 대응체계 제도화의 기본구상 .....	89
1)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모델 .....	89
2) 범죄대응 거버넌스 .....	91
2. 불법무역 대응체계의 주요 정비 방향 .....	91
1) 법규 정비 .....	92
2) 조직 정비 .....	94
3) 대응절차의 개선 .....	96
4) 이해당사자간 협력 .....	99
<b>VI. 결 론 .....</b>	<b>102</b>
<b>참고문헌 .....</b>	<b>104</b>
<b>ABSTRACT .....</b>	<b>107</b>

# 1. 서론

## 1. 연구의 목적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세계화와 함께 국제경제에 있어서 커다란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이미 2002년 말 기준으로 GATT/WTO에 통보된 FTA는 GATT가 발족된 1948년 이래 지난 54년간 총 255건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131건은 WTO가 새로 발족된 1995년 이후 7년간(1997-2002)에 통보된 것이다(채훈, 2003). 최근 들어서도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확산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5년 7월 현재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은 총 180건이며 이 중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 1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서비스협정이 31건, 개도국간협정이 21건, 관세동맹(CU: Customs Union)이 1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다. 한-칠레 FTA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의 FTA도 2004년 11월 타결되어 2005년 12월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2006년 3월 2일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sup>1)</sup>과의 FTA 협상 또한 2005년 7월 타결되어 2005년 9월에 가서명을 마치고 후속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우리 정부는 2006년에 한-EFTA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이와 아울러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중에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의 FTA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2005년 2월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의 FTA 협상, 그리고 2005년 7월부터 캐나다와의 FTA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특히 2006년 2월부터는 미국과 FTA 협상이 출범되어 진행중에 있다. 이 밖에 멕시코, 캐나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sup>2)</sup>) 등과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중

1)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

2) 메르코수르의 영문 정식명칭은 Southern Common Market이며 여기에는 정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과 준회원국인 칠레와 볼리비아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 단계 발전한 관세동맹(CU)에 해당하며, 역내 무역 자유화와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 관세율을 적용한다. 당시 회원국 간 역내 교역액은 연간 7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1995년 창설과 함께 교역액이 1백58억 달러로 급증했다. 1994년부터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함께 미주 대륙을 대표하는 경제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에 있다.

이처럼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FTA가 갖고 있는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FTA 역외국들이 자신들이 직면하는 상대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특히 최근 들어 FTA가 국가 간 협력관계 구축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되면서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다자주의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미국마저 적극적인 지역주의 움직임의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지연으로 세계적 차원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있는 점 등도 최근의 지역주의 움직임의 배경이 되고 있다(성완진, 2005).

이처럼 FTA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추진됨에 따라 세계 무역의 자유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무역규모 역시 증가되고 있다. 즉 FTA에 따른 무역장벽 감소, 국제경영활동의 확대, 경제성장 등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와 같이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국제간 무역에서의 탈법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무역규모의 증가와 함께 무역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은 탈법 무역의 단속을 어렵게 한다. 다국적기업들이 원자재의 조달처와 완제품의 생산 거점, 그리고 판매처를 전 지구적 시각에서 선택함에 따라 국제무역의 절차도 그만큼 복잡해지게 되었다. 여기에 국가 간 지역경제통합 등 차별적인 무역협정이 늘어남에 따라 관세특혜 적용과 관련이 있는 원산지규정의 적용과 같은 국경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무역의 복잡성은 FTA 체결의 확대, 기업의 글로벌 경영활동의 강화 등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탈법무역의 적발과 단속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무역규모의 확대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전자무역의 발전 역시 탈법 위험성을 높이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전파, 전자상거래의 확대 등은 국제무역에서 신속 간편한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규모의 증가와 함께 무역참가자들이 첨단 통신기술과 전자상거래 기법을 활용하여 국제무역에서 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조류 가운데 최근에는 관세범죄, 부정무역범죄,

마약밀수범죄 등 일반 불법무역의 범주 속에서도 새로운 불법무역의 쟁점으로 이른바 지적재산권침해 사범과 사이버밀수사범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적재산권침해 범죄 특히 상표법 위반 범죄에 대응하여 현재 우리 정부는 위조상품 이른바 ‘짜퉁’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sup>3)</sup> 이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자칫 국가 신인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진국의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요구로 통상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위조상품의 반출입과 국내 유통이 억제되지 않아 국가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sup>4)</sup>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국가 신인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조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국가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의 증가와 함께 최근 사이버밀수사범의 증가가 불법무역에 있어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거래에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사이버밀수가 증가하고 또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다.<sup>5)</sup>

본 연구는 이처럼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 발효와 2006년 한-미 FTA 추진 등 FTA 시대를 맞이하여 무역의 자유화와 함께 무역의 복잡화, 전자화가 확산되고 이에 편승하여 국제거래에서 탈법무역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또한 위조상품(counterfeit goods, 일명 ‘짜퉁’) 등 상표법 위반물품 밀수와 사이버밀수 등 새로운 쟁점 영역의 불법무역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데 착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FTA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불법무역의 일반유형 및 실태를 분석하

3)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한 위조상품은 모두 1255건이다. 그 금액만도 8566억7800만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이다. 지난 2005년 단속실적은 1591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계(530억원), 의류(396억원), 핸드백·가죽제품(337억원)이 전체실적의 80%를 차지했다(관세청뉴스, 2006. 2. 6).

4) 이러한 전세계적 규모의 위조상품 확산 속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중 최대 위조상품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미국에 의해 위조상품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도 한국을 OECD 국가 가운데 최대 위조상품 수출국으로 낙인찍었다.

5) 사이버밀수는 해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구매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이를 국제우편이나 특송 업체를 통해 배송해 주거나, 국내에서 쇼핑몰을 개설하고 외국인 대리인이 물건을 대신 배송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에 의해 2005년도 1-3월 동안에 적발된 사이버 밀수품은 모두 71억 원으로 지난 2001년 2억 원 보다 약 35배 증가하였다. 서울세관이 적발한 사이버 밀수는 2002년 21억 원, 2003년 37억 원에 이어 2004년에는 58건, 74억원 상당에 이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현 추세대로라면 사이버 밀수가 향후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inews24, 2005. 6. 12).

고 제도의 설계(institutional design)와 집행과정을 통해 불법무역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제도적 대응 모델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제제도와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 무역거래의 법질서를 벗어난 불법무역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이러한 불법무역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함축한 제도적 대응 모델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주의적 접근 시각이 불법무역의 분석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바, 특히 본 논문은 합리적 선택에 기반한 신제도주의 연구방법에 의해 불법무역의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는 행태주의와 原子的 설명(atomistic explanation)에 대한 懷疑에서 출발한다. 신제도론은 어떠한 제도의 개념과 속성을 단순히 ‘묘사’하던 종래의 제도 연구(구제도론)와는 달리 제도 자체가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능이나 인간의 유인체계에 미치는 제약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제도론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신제도주의는 분과학문 경계에 주목하여 크게 신제도경제학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Rational Choice New Institutionalism), 역사적 신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사회학적 신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방법론적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비환원주의적 제도주의(Holistic Institutionalism)와 환원주의적 제도주의(Reductionistic Institutionalism)로 구분하기도 한다.

비환원주의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주어진(taken-for-granted) 것으로 보고 제도가 마치 하나의 통일된 행동주체로 의제하여 파악하는 접근방법이며, 환원주의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인간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제약, 의식적 고안의 산물로 봄으로써 그 분석의 기초를 개인들의 거래행위(individual transactions)에 두는 접근방법이다(김난도, 1997: 129-130). 신제도경제학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후자인 환원주의적 제도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sup>6)</sup>

제도경제학 분야에서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최초로 윌리엄슨(O. E.

Williamson)에 의해 명명되었으며(Williamson, 1981: 548-577), 그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론이 정립되었고 또한 그 이론의 발전을 가져왔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특히 지난 20-30년간 신고전학파가 전제로 하는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비판하고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학의 비중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황준성, 2000: 334).

제도(institution)에 대한 개념규정은 신제도주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노스(D. C. North)와 같이 제도를 “인간 상호관계의 틀을 형성하는 제약조건”으로 넓게 파악하는 학자도 있고, 오스트롬(E. Ostrom)의 경우처럼 제도를 규칙(rule)과 같은 의미로 매우 한정적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제도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는 것은 연구자들이 제도의 어떤 속성을 중시하느냐, 어떠한 맥락과 목적을 가지고 제도를 연구하느냐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난도, 1997: 132).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 제도변화, 그리고 경제성과를 분석한 든 노스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North, 1990: 3).

“제도(institution)란 사회에 적용되는 게임의 법칙(the rule of game)이다. ... 그것은 인간이 고안한 제약으로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구체화한다. 따라서 제도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어떤 것이든 인간의 교환에서의 인센티브를 구조화한다. 제도변화는 사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 양식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역사변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다. 장기에 걸친 경제의 성과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제도가 발전하는 양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 또한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노스의 경우 제도를 가장 넓게 해석하면서 여기에 관습이나 행동양식과 같은 비공식적 제약(informal constraints)과 법, 규칙과 같은 공식적 제약(formal constraints)을 포괄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스의 개념규정은 그가 경제

6) 일반 사회과학 차원이 아닌 제도경제학 분야에서 신제도주의를 살펴보면 인류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보면서 경제 활동을 문화 활동의 일부로 보는 구제도주의와 달리, 신제도주의는 신고전파적 입장에서 개인의 합리성과 시장의 균형을 가정하면서 제도가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내부화시켜 준다는 점을 강조하는 학파로서 구분되기도 한다(전택수, 1998: 115). 또 에거트슨(T. Eggertsson)은 신제도주의 경제학 중에서도 최적화와 합리적 선택의 가정을 거부하며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이먼(H. Simon) 類의 경제학을 ‘New Institutional Economics’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경제학을 ‘Neo-institutional Economics’로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Eggertsson, 1990: 6-9).

사학자로서 한 나라 또는 지역의 경제적 성취에 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연구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까지 신고전학과에서 事前的으로 주어진 제약조건으로 인식하였던 공식·비공식적인 제약을 비롯한 재산권·법률체제·정부 등의 제도들이 경제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노스의 제도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다.

노스의 개념규정과 달리 공유재(CPR: Common Pool Resources) 문제의 해결에 오랫동안 집중해온 오스트롬은 제도를 여러 가지 차원의 규칙(rule)의 집합으로서 파악한다(Ostrom, 1986). 공유재의 사용은 사용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편익이 감소하는 반면, 비배제적 성격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의 무절제한 사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구성원들의 선호와 유인구조의 반영인 제도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관한 연구의 맥락에서 제도가 연구되므로, 오스트롬의 제도개념은 전술한 노스의 개념보다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서, 규칙은 물리적·행태적 법칙과 더불어 행동상황(action situation)을 구성하고 이 행동상황이 특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제약조건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의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연구되는 제도의 개념에는 세 가지 요소, 즉 i) 사회내의 인간들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측면, ii) 인간의 선호와 행위를 제약하는 ‘규범’으로서의 측면, 그리고 iii) 그럼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거래행위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기능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제도의 개념을 규정한다면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선호와 행위에 제약함으로써 그들의 다양한 거래와 교환에 수반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규범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념의 논의를 도입함으로써 신제도주의에서는 그간 신고전파에서 간과하였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더 적실성 있게 분석해내고 있는데, 그 적실성은 우선 종래의 신고전파가 가지고 있던 기본가정들을 현실성 있게 완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서, 신고전파가 전제하고 있는 ‘마찰 없는 완전 경쟁적 시장’의 가정은 해롤드 뎀세츠(Harold Demsetz)의 표현대로 소위 ‘열반’(Nirvana)의 접근방법일 따름이다. 신제도주의는 우선 시장에 대한 완벽한 정보와 마찰 없는 거래의 가정을 제한하고 비용이 드는 정보(limited and

costly information)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존재라는 가정으로 재구성한다. 이처럼 신고전파가 전제하고 있는 제도인 시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은 코즈(R. H. Coase)의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코즈의 명제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경우는 거래비용이 없는 경우이고,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분배가 소유권(property rights)의 구조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비용이란, 거래자가 시장이라는 제도를 사용할 때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즈의 기여는 바로 이처럼 가격기구 자체를 사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데에 있다. 노스에 의하면 이러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의 발현이 바로 제도이다. 따라서 거래비용은 신제도론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의 하나가 된다(김난도, 1997: 132-135).

거래비용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sup>7)</sup> 노스의 정의는 앞선 코즈의 견해의 맥락에서 거래비용을 포괄적이면서도 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노스에 의하면 거래비용은 신고전파에서의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경제적 교환(economic exchange)에 수반되는 제 비용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는 상품의 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드는 측정비용(measurement cost)과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을 감시·집행하는 비용(enforcement cost) 등을 포함한다(North, 1990: 27).

거래비용에서 특기할 것은 거래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강제하는 비용(enforcement cost, 또는 policing agreement cost)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용은 계약당사자간에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함으로써 계약내용의 준수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데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데, 그러한 감독비

7) 경제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학자는 커먼스(J. R. Commons)라고 볼 수 있으며(Commons, 1991), 이어서 코즈에 의해 보다 구체화되어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었다. 코즈에 의하면 거래비용이란 1) 시장거래를 위하여 거래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고, 2) 거래하고 싶은 사람에게 거래조건을 알려주고, 3) 교환이 성립될 때까지 서로 협상하고, 4) 계약서를 작성하고, 5) 계약조건이 준수되었는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 등을 하는 데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으로 본다(Coase, 1960: 15). 즉 코즈는 거래비용을 거래를 위한 탐색과 정보비용, 상담과 의사결정비용 및 감시와 이행비용으로 정의한다. 달만(C. J. Dahlman)은 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원의 손실을 거래비용이라고 정의하고(Dahlman, 1979: 148) 애로우(Arrow)는 경제체제를 작동시키는 일체의 비용(costs of running the economic system)으로 정의한다. 또한 신제도주의 학파에서 대표적 학자 중의 한 사람인 윌리엄슨(O. E. Williamson)은 마찰 없이 기계가 작동하듯 마찰 없이 재화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정의한다(Williamson, 1985: 1). 거래비용을 마찰(friction)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거래비용에 관한 윌리엄슨의 정의는 애로우의 정의와 유사하다. 이밖에도 거래비용에 관한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으나 현재까지 거래비용에 관해 신제도주의 내에서 하나의 통일된 개념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황준성, 2000: 338-339).

용이 커서 최적의 해결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선의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계약당사자들의 선호가 서로 조화되도록 유인체계를 구성하는 것인데(incentive compatibility solution),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를 발전시킨 것이 이른 바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이다(김난도, 1997: 135; Eggertsson, 1990: 40-45).

본 연구는 앞서 논의된 신제도주의 내의 제도 개념 중에서 노스의 넓은 의미의 제도 개념을 택하고자 하며<sup>8)</sup> 특히 이러한 제도 아래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그 감소방안 모색의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하려한다. 즉 불법무역의 발생, 차단과 단속, 효율적 제도의 마련이 계약을 감시·집행하는 비용(enforcement cost) 또는 거래 내용이 지켜지도록 강제하는 비용(policing agreement cost)의 발생과 대응 및 그 감소 방안 구축이라는 시각에서 진행될 것이다.

본 논문의 불법무역 연구범위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 시기에 발생한 무역범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II장에서 불법무역 연구를 위한 분석 틀과 불법무역의 범주를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FTA 시대 한국의 무역환경으로서 세계 FTA의 추세 및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그에 따른 탈법위험을 살펴본다. 이어 IV장에서는 불법무역의 일반 유형으로 관세범죄, 부정무역범죄(지재권범죄, 원산지범죄), 마약범죄, 사회안전범죄 등을 개관하고 이어 불법무역의 심층적 실태분석으로 관세범죄를 다룬다. 본 연구의 심층 실태분석에는 지적재산권범죄와 사이버 밀수범죄 등의 최근 쟁점은 포괄하지 않고 불법무역의 대중이 되는 관세범죄만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 마지막 V장 제도적 대응방안에서는 불법무역 대응체계 제도화의 기본구상과 불법무역 대응체계의 주요 정비 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8) 본 연구가 이처럼 넓은 의미의 제도 개념에서 출발하여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모델을 구상하려는 이유는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가 경찰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기업 및 시민 등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상호협조가 동반되는 하나의 동태적 과정으로서 그 범죄대응 협력상 문제들이 반드시 법적 차원만으로는 해결되어나갈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II. 불법무역의 분석 틀과 범주

### 1. 불법무역의 분석 틀

국가간 무역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불법무역은 어떠한 틀과 범주에서 분석될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효율적 국경절차(Border Procedures)와 이를 일탈하는 불법교역의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자신의 여건에 따라 고유한 국경절차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에 따라 국경을 출입하는 수출입화물 또는 통과화물은 반드시 각국이 정한 일정한 국경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경(관세선)을 출입하는 국제화물에 대해서는 그 나라 법률이 정한 각종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는 국경절차가 따른다. 이러한 국경절차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하나의 제도적 제약(institutional constraint)으로서 국제통상과 국제물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효율적인 국경절차를 마련하고 불법무역을 차단하는 것은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나 당면한 주요 현안 문제이지만 특히 우리와 같이 개방적 국제통상 국가, 동북아에서의 국제물류 중심지를 지향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경절차에서 법률로 요구되는 것은 그 절차가 통과냐, 통관이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관세 등 제세와 공과금의 부담, 지적재산권침해의 금지, 원산지의 성실한 표시, 방역, 위생 및 안전기준의 충족, 국가·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물품의 수출입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GATT체제하에서 여러 차례 행해진 다자간 협상으로 세계 각국의 국경절차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은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민의 건강, 환경, 국가 및 사회안전 등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는 점차 강화되어 왔다. 국경절차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국제적으로는 통일되고 조화롭게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바로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문제이며, 이는 국경절차에서 적용되는 수많은 법률요건의 충족 혹은 그 확인을 위한 제반 절차의 간소화 내지 효율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역원활화를 강도 높게 추구할 경우 법률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물품의 통과 또는 통관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가능성을 국경절차에서의 '탈법위험'이라 할 때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은 무역원활화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무역원활화는 탈법위험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화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즉 국경절차에서의 무역원활화와 탈법위험 방지는 동시에 추구하고,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국경절차를 염두해 두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탈법무역을 분석하는 시각이 요구된다 하겠다.

무역원활화 자체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연구한 사례가 있으나 무역원활화를 국경절차에서의 탈법위험과 연계하여 연구한 사례는 드물다. 다만 유사한 주제로 오웅탁·김진섭이 ‘무역원활화와 사회안전 도모의 조화방안’을 주제로 연구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오웅탁, 김진섭, 2003: 215-238). 동 연구는 국경절차중 세관의 통관절차를 중심으로 기존 통관 시스템을 전제로 무역원활화와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의 반출입(搬出入)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발전된 연구로는 전반적인 국경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무역원활화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보다 광범위한 개념의 탈법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정재완의 연구가 있다(정재완, 2005: 1-22).

### 1) 무역원활화의 추구

세계 각국과 다수의 국제기구가 무역원활화를 추구하게 된 배경으로는 무역규모의 증가, 무역속도의 증가, 무역의 복잡성 증가 등을 들 수 있다(정재완, 2005: 3-4).

첫째, 무역규모의 증가이다. 경제성장과 무역장벽의 감소, 국제경영활동의 확대 등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이 무역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시스템의 개선 없이 국경절차를 이행할 경우 한정된 정부자원으로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능하게 된다. 무역원활화 조치가 없이는 절차이행을 위한 대기시간의 장기화 등으로 국경절차가 심각한 무역장벽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무역속도의 증가이다. 물류관리에서 공급망관리(SCM : Supply Chain Management) 기술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전파, 전자상거래의 확대 등은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무역에서도 이른바 JIT(Just In Time) 기법의 적용을 늘리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국경절차가 최대한 신속·간

편·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셋째, 무역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다국적기업들이 원자재의 조달처와 완제품의 생산거점, 그리고 판매처를 전 지구적 범위와 시각에서 선택함에 따라 국경절차도 그만큼 복잡해지게 되었다. 여기에 국가들간 지역경제 통합등 차별적인 무역협정이 늘어남에 따라 관세특혜 적용과 관련이 있는 원산지규정의 적용과 같은 국경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게 된 것이다. 무역의 복잡성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확대, 기업의 글로벌 경영활동의 강화 등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절차는 그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무역에서의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바 여기에 무역규모와 속도, 복잡성의 증가는 거래비용을 더욱 증폭시킨다. 국경절차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무역거래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 조사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 따라 무역거래액의 약 0.5%에서 약 15%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조사 연구주체에 따라 이와 같이 비용의 크기에 차이가 큰 것은 조사시점이 다르고, 조사 대상국가와 비용범위의 설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연구 사례를 보면 1994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관련 금융, 세관절차, 정보통신비 등이 무역거래 대금의 약 7~10% 정도인 것으로 보았고(UNCTAD, 1994), 일본무역진흥회(JETRO :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는 2002년 일본의 경우 수입절차에 있어서 전자데이터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는 수입금액의 0.5-0.8%, EDI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2%로 파악한 바 있다(JETRO, 2002).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국경절차 환경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역비용도 일본과 유사하게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Haralambides와 Londoño-kent는 2002년 연구에서 미국과 멕시코간의 국경절차에 있어 물품의 인도·인수, 검사 등으로 인한 시간지체에 따른 비용이 멕시코측은 무역거래 금액의 0.8-2.1%, 미국측은 0.6-1.1% 정도인 것으로 분석하였고(Haralambides, H. and P. Londoño-Kent, 2002), EC는 일찍이 1989년에 EC국가간 거래에서 거래금액의 3.5~15%가 서류 등의 무역거래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EC, 1989).

특히 기업의 글로벌 경영활동의 강화와 FTA의 확대는 원산지 문제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무역에서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세계경제는 생산과 무역 및 소비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생산과정과 무역단계 및 소비지역이 여러 나라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원산지판정 기준 및 적정표시에 의한 판매와 소비 역시 중요하게 되었다.

원산지는 브랜드의 속성을 가진 원산지효과 때문에 상표만큼의 가치를 가질 때가 많다. 원산지 정보는 생산과정 등에 대한 중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계약여부를 결정짓게 되고 그 결과 무역의 양을 결정짓게 한다. 생산과 무역 과정이 여러 나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지고, 원산지에 따라 수입규제가 달라져 무역조건을 달라지게 한다. 즉, 원산지는 무역원활화에 영향을 주는 한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 Asia Europe Meeting)<sup>9)</sup>에서는 통관절차 간소화, 조화 및 투명성을 위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보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무역을 위해서 원산지증명 등에 대한 정보를 통관과 통계 및 환급을 위해 세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UN/ECE와 UNCTAD의 추정에 의하면 이들 정보제공에 필요한 비용이 국제무역거래비용의 약 2~10%를 차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개도국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김영춘, 2001).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FTA 확산에 따른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제3국 산 제품의 우회수입 차단 및 탈법무역 방지에 효과가 있으나 너무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오히려 FTA 체결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어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9) 1994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세계경제인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주관으로 개최한 아시아·EU(European Union) 회의에서 구상하였다. 참가국은 2004년 현재 아시아에서는 브루나이·중국·인도네시아·일본·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한국·타이·베트남, 유럽에서는 EU 25개국이다. 주요 활동 방향은 자유무역 촉진, 양 지역의 무역과 투자 확대, UN의 개혁 촉진, 환경문제 개선, 약물·화폐위조·국제범죄·테러에 대한 협력강화 등이다. 제1차 회의는 1996년 3월 1~2일에 타이 방콕에서 개최하였다. ASEAN 회원국 및 한국·중국·일본 등 10개국과 EU 15개국의 정상, EU 집행위원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ASEM의 방향 설정과 정치·경제·문화 등 포괄적인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제2차 회의는 1998년 4월 3~4일 영국 런던에서, 제3차 회의는 2000년 10월 20~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3차 서울회의의 성과로는 정치·안보 분야의 경우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을 채택하였으며, 경제·재무 분야 회의에서는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두 지역 간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밖에 4차회의는 2002년 9월 덴마크에서 5차회의는 2004년 10월 8~9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바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원산지 기준에 의해 많은 행정적 거래비용이 초래됨을 강조하고 있다. Koskinen(1983)의 연구에 의하면, 원산지 증명을 받기 위한 행정비용이 수출 거래액의 1.4~5.7%를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Holmes and Shephard (1983)의 의하면 수출관련 문서가 평균적으로 36종류, 360쪽에 달한다고 조사하였다. 한편, Krueger(1985)는 미국-캐나다 FTA에서 채택된 기관발급제로 과다한 행정비용을 초래하여 기업의 비용상승과 경쟁력 약화 등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NAFTA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자율증명제가 채택되었고, 미국은 그 이후로 추진된 다른 FTA 대상국들과의 원산지협상에서 자율증명제를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FTA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기관발급제에서 자율증명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원산지 증명방식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원산지 확인과정에서 기업의 원산지증명을 위한 거래비용과 세관 운영상 추가적인 행정적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원산지 증명제도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통관절차의 소요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원산지 확인과 관련하여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발생의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 순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소액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온라인을 통한 전자 원산지 증명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여타 국가와의 FTA가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도,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행위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배제 및 처벌 등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선진제도를 우리나라의 관세법에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FTA 관세특례법”을 제정하여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시 법령 운영의 경제성, 효율성 및 대국민 편리성을 제고시킬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정재호, 2006).

무역원활화의 목적은 이처럼 국경절차에서 발생하는 무역 장애요인을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무역을 촉진·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추구하는 주체에 따라 사용 개념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무역상품의 국경절차를 ①투명하게 ②예측가능하게 ③단순하게 ④신속하게 ⑤합리적으로 ⑥조화롭게 행함으로써 무역을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역원활화 조치는 국경절차를 개선하여

무역상 거래비용을 경감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국의 소득증가라는 후생 효과로 나타난다.

OECD의 조사연구 자료에 의하면 무역원활화로 인해 무역거래비용을 1% 경감시킬 경우 전 세계적인 소득 증가효과는 0.13%(직접비용 경감으로 인한 증가 0.02%, 간접비용 경감으로 인한 증가 0.11%)로, 미화 약 38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OECD, 2003.11: 21-22). WTO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와 EU, NAFTA, APEC, ASEM등에서도 이를 중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들 기구 또는 협력체의 무역원활화 추구의 강도나 범위, 대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경절차의 투명성, 효율성, 예측가능성,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는 큰 차이가 없다(정재완, 2005: 4-5).

## 2) 탈법 위험성의 증가

무역규모와 무역거래 속도의 증가, 무역거래의 복잡화는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무역원활화를 추구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탈법 위험 역시 증가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FTA에 따른 무역장벽 감소, 국제경영활동의 확대, 경제성장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무역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와 같이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국제간 무역에서의 탈법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무역규모의 증가와 함께 무역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은 탈법 무역의 단속을 어렵게 한다. 다국적기업들이 원자재의 조달처와 완제품의 생산거점, 그리고 판매처를 전 지구적 시각에서 선택함에 따라 국제무역의 절차도 그만큼 복잡해지게 되었다. 여기에 국가 간 지역경제통합 등 차별적인 무역협정이 늘어남에 따라 관세특혜 적용과 관련이 있는 원산지규정의 적용과 같은 국경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무역절차의 복잡성은 FTA 체결의 확대, 기업의 글로벌 경영활동의 강화 등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탈법무역의 적발과 단속도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거래의 복잡화뿐만 아니라 무역규모의 확대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전자무역의 발전 역시 탈법 위험성을 높이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전파, 전자상거래의 확대 등은 국제무역에서 신속 간편한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규모의 증가와 함께 무역참가자들이 첨단 통신기술과 전자상거래 기법을 활용한 탈법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무역에서 이러한 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3) 국경절차 모형

지역경제통합과 경제개방의 가속화로 국경절차에서 관세장벽 등 순수 경제적 의미의 국경은 수십년 이내에 거의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안전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규율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 아래 국경절차에서 탈법위험 최소화는 무역원활화와 함께 동시에 조화롭게 달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 국경절차의 목표는 일단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 국경절차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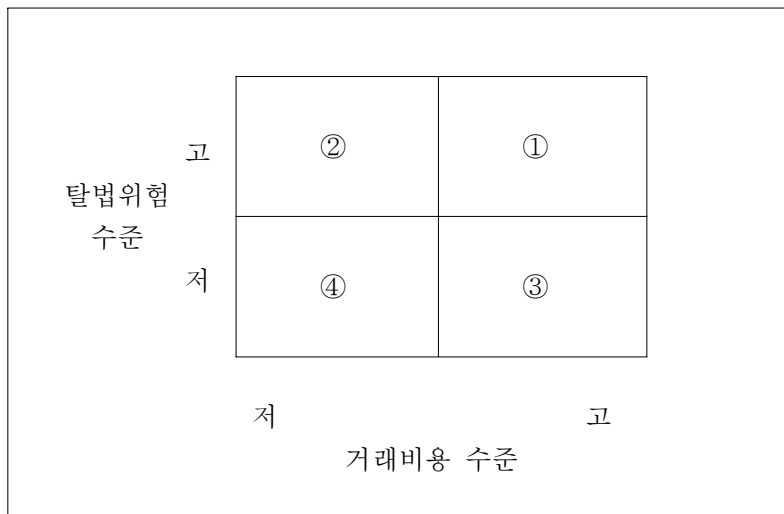
국경절차	
탈법위험 최소화	무역원활화(거래비용 최소화)
목표 : 국경절차에 적용되는 법익의 달성 ⇒ 효과성(정확성) 확보	목표 : 국경절차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의 최소화 ⇒ 효율성(신속성) 확보

탈법위험의 최소화는 효과성(정확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그 극대화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법익을 완전하게 확보하는 것으로서 제도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무역원활화는 효율성(신속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그 극대화는 통관과정에서

지체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탈법위험의 최소화와 무역원활화(거래비용 최소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운용·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는 <그림 2-2>와 같은 매트릭스(matrix)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2> 국경절차 모형에서 종축은 탈법위험 최소화 정도이다. 평가대상인 국경절차가 위쪽으로 위치할수록 당해 국경절차로 인한 탈법위험도가 높아지고, 아래쪽으로 위치할수록 탈법위험도가 낮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횡축은 무역원활화 최소화 달성 정도이다. 평가대상인 국경절차가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당해 국경절차로 인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왼쪽에 위치할수록 적게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림 2-2> 국경절차 모형



<그림 2-2>에서 특정 국가의 국경절차는 탈법위험 최소화와 무역원활화라는 두 가지 축의 결합도로서 그 위치가 평가된다. 나아가 현 위치에서 향후 어떠한 국경절차 운용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가 모색될 수 있다.

국경절차 모형에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탈법위험 최소화와 무역원활화가 달성된 ④ 분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탈법위험은 낮으나 거래비용이 높은 ③ 분면의 경우에는 거래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 (design), 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탈법위험은 높으나 무역원활화 수준은 낮은 ② 분면의 경우에는 탈법위험을 낮추는 제도적 대응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수입물품의 통관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선하증권(B/L)단위 수입신고제도와 WCO 교도협약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기적 신고제도는 각각 ②와 ③으로 표시될 수 있다. 선하증권 단위 수입신고는 수입신고건수가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신고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대신 수입단계에서 적절하게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탈법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주기적 신고제도는 일정기간별로 수입 또는 납세신고를 일괄하여 하게 되므로 신고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반면 물품이 수입된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다른 적절한 보완장치가 없다면 현품확인을 통한 탈법위험 배제가 어려워지므로 탈법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탈법위험에 대한 보완조치를 병행하는 것으로 주기적 신고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이 제도는 우측상단에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행 수입통관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세구역장치후 신고제도와 입항전수입신고제도는 각각 ②와 ④로 표시될 수 있다. 보세구역장치후 신고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다음 수입신고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통관절차가 완료된 다음 다시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가능하므로 물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추가된다. 반면 입항전수입신고제도는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하는 한 보세구역 반입자체가 불필요하므로 물류가 크게 원활해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탈법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현행 입항전수입신고제도는 제도를 일부 보완하여 운영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국경절차의 형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같은 제도일지라도 운용상황에 따라 매트릭스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현품의 검사제도를 ①이라 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검사비용을 낮추게 되면 ③으로, 검사비용을 높이면 ②로 그 위치가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고도화된 위험관리를 병행한다면

④의 위치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정재완, 2005: 8-10).

#### 4) 국경절차 모형에서 본 현행 관련제도의 문제점

이상적인 국경절차가 <그림 3-2>의 우측상단에 위치하는 제도의 마련과 그 운영이라 할 때 현행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들은 다른 분면에 위치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원인 중 많은 것들이 기본적 시스템의 미비와 관련이 깊다고 보이며, 이 가운데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검토될 수 있다(정재완, 2005: 10-13).

첫째, 분산·독립적 관리시스템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절차 관련 법률의 입법과 집행 및 관리 시스템은 <표 2-1>과 같이 분산형·독립형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탈루에 대한 대응을 세관이 전담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있으나 지적재산권보호,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의약품 또는 안전기준, 식품의 수입관리와 같이 소관법률 및 주관부서가 수출입물품을 직접 규율하는 관세당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특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로서 국경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것은 조세와 관련한 법률을 제외하고 55개에 이르는데, 이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은 관세 및 통관 관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산업자원부장관이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물품은 허가·승인·추천·신고·검사·검정·시험 등 소위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사실은 종이 또는 전자적 형태의 서류로서 입증된다. 이때 증명서류의 발급은 법률을 소관하는 행정각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산하단체 등에서 하며, 이중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sup>10)</sup>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 226조에 의해 세관장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sup>11)</sup>

10)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국민보건, 위생, 환경 등 행정목적에 의하여 수출입관련 특별법령상 규제 또는 제한 사항을 통관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수출입공고상 수출입금지품목과 제한품목, 자연환경보전법상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 등을 들 수 있다.

11) 관세법 제226조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통관에 있어서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lt;표 2-1&gt; 국경절차 관련 법률의 입법과 집행·관리

단 계		세부사항	관련기관
입 법	법 령	법령상 근거 제정과 개정	법률소관 행정각부 및 입법기관
	고 시	구체적인 대상품목과 요건 규정	법률소관 행정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업자원부
요건확인	증명서류 발급등과 사전·사후적 확인 등의 관리		법률소관 행정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요건확인 서류 및 현품의 확인		세관(세관장 확인대상품목의 경우)
범칙단속	불법행위의 조사·단속		법률소관 행정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세관, 사법경찰기관

국경절차에서의 규율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당연히 탈법위험 여부의 확인과 관리도 물품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행해져야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표 2-1>과 같이 법적 규율과 이의 집행이 여러 기관·단체로 분산됨에 따라 절차이행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정보의 교류와 통합의 미흡, 업무의 중복, 전문인력 및 장비 활용도의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관세선 중심의 대응에 따른 한계 문제이다. 국경절차가 관세선상에서 이루어질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출입 및 통과 화물 즉 무역상품 물동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절차이행을 지체시킨다. 그렇다고 물류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관리 인원의 증원을 기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아무리 첨단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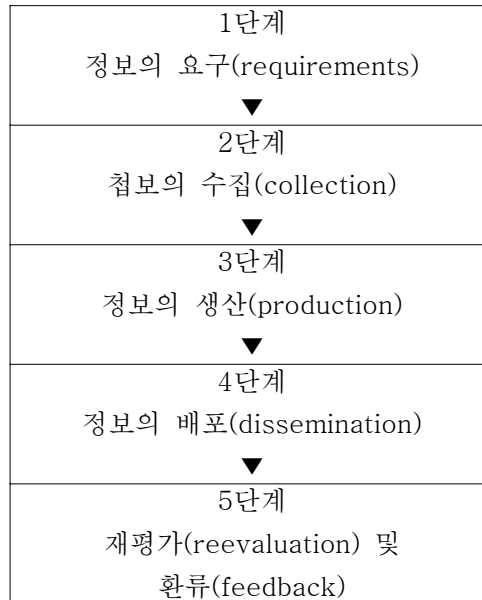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통칙】 226-0...1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의 의미] 법 제226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이라 함은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건확인이 가능한 수출입 관련 기관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및 기타 조건의 확인·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따른다. 무역원활화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탈법위험에 대한 효과적 차단도 어려워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절차를 살펴보면 이미 적지 않은 국경절차 이행이 물품이 관세선에 도착하기 이전 또는 관세선을 통과한 후에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절차는 무역상품이 관세선에 도착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절차가 종료되어야 해당 물품의 관세선 통과가 허용되고 있다.

셋째,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정보절차)의 부재이다. 국경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확보와 이의 활용시스템 미흡의 문제이다. 국경절차를 원활하게 하면서 탈법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국경절차 대상인 물품 또는 사람에 대한 선별적 통제를 하는 효율적인 위험관리(R/M : Risk Management)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미 발생한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적발과 단속이 필요하다. 위험관리는 국경절차에서의 탈법위험이 높은 업체 또는 개인을 선별하여 이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거나, 효과적으로 적발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현재 국경절차에서의 위험관리는 일부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으나 기관간 정보의 공유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관의 경우 위험관리는 관리대상화물검사제도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대상 선별제도(Cargo Selectivity)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위험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우범성'의 구성요소를 보면 무역업체, 수출입물품, 원산지, 적재항, 운송사/포워더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으나 과거의 통관·심사·조사 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관세청, 2005). 위험관리와 탈법단속에 필수적인 것이 정확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는 <그림 2-3>과 같은 관련되는 자료와 첩보의 수집, 정보 생산, 배포, 환류라는 일련의 순환절차를 통해 확보되고, 활용되는 것이다.

&lt;그림 2-3&gt; 국경절차 관련 정보순환체계



<그림 2-3>에서 제1단계의 정보의 요구과정은 정보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집기관에 정보의 수집을 지시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의 정보 수집은 정보생산부서에 전달하기까지 과정이다. 이러한 정보는 국경절차 이행 기관별로, 해당기관의 특정 부서에서, 비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용되고 있다<sup>12)</sup>. 3단계 정보의 생산과정은 수집된 정보를 분류 및 기록(collation), 평가(evaluation), 분석(analysis), 종합(integration), 해석(interpretation)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이다. 4단계 정보의 배포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합한 형태와 내용을 갖추어 적당한 시기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 및 분석을 통

12) 단순한 자료의 수집은 현재 정부 각 기관에 의해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세관의 경우 국경절차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관련된 자료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의 입항단계에서부터 각종 신고를 자세하게 하도록 각종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대부분이 탈법단속을 위한 정보기능을 향한 것이라기 보다 통계수집 또는 증거수집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정재완, 2005: 13).

해 정보를 생산했으면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형태와 내용을 갖추어서 적시에 배포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으면 정보의 가치는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경찰대학, 2005). 마지막 단계는 정보의 재평가 및 환류과정이다. 전체적인 운용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박주원, 2004). 또한 정보절차의 최종생산물이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정보기관에 의한 정보의 요구, 수집, 생산, 배포 등의 활동은 재평가 및 환류를 통해 조정을 받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 의해 정보기관의 활동은 전체적인 정보순환체계를 이루게 된다. 우리나라의 정보순환절차를 보면 3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각 기관 특정부서의 일부 인원에 의해 비체계적으로 제한되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관간이나 부서간 공조체제도 상당히 취약하다. 특히 제3단계 분석은 사건분석, 경향분석, 시장분석, 재정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 여러 분석기법이 다각적으로 동원되어 정보가 획득되어야 하나 전문가의 부족 등으로 획득되는 정보의 량과 질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sup>13)</sup>.

## 2. 불법무역의 범주

국경절차에서 불법무역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무역의 범주와 유형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불법무역의 범주설정은 국제무역에서 탈법가능성 혹은 탈법위험을 중심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 국경절차 대상물품을 국제간을 교류하는 것이므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탈법의 가능성을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탈법위험’이라 할 수 있다. 즉 법률 또는 조약에 규정된 법익의 실질적인 침해 내지 침해의 가능성이 곧 탈법위험이라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정재완, 2005: 5-7). 우리나라 국경절차에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 55개 법률을

13) 사건분석은 특정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들을 요약, 비교, 조합, 재구성하여 결론을 추론하는 분석이고, 경향분석은 기존의 정보자료를 기초로 예견되는 동향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시장분석은 불법한 특정상품시장의 주소비계층과 시장규모 등을 분석하는 것이며, 재정분석은 은행 입출금현황, 국제간 또는 회사간 상품의 유통경로, 영업기록 등을 살펴 불법행위의 재정적·경제적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분석은 조직범죄에서 조직 내부의 계층구조를 파헤치거나 조직구성원 개인의 역할이나 다른 집단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정재완, 2005: 13).

중심으로 이러한 위험을 정리하면 <표 2-2>과 같다.

국경절차에서 탈법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탈법이 성사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견고추 밀수의 경우, 정상적인 견고추 수입시 부과되는 조세는 2005년 현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297%이다 따라서 밀수입이 성사될 경우 적어도 297%에 해당하는 세금 부분이 경제적 이득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다. 탈법위험의 현실화 정도는 탈법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의 크기와, 탈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 및 적발되었을 때의 제재로 인한 불이익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

<표 2-2> 국경절차에서 발생가능한 주요 탈법위험

구 분	주 요 탈 법 내 용
조세·공과금	관세, 내국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주세), 기타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공과금의 탈루
산업·경제, 소비자보호 정책	지적재산권 침해, 덤핑,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 외환사범(재산도피, 자금세탁 등을 포함)
국민의 건강, 생명, 환경보호	마약류의 밀수입, 방역조치의 기피, 유해식품·의약품의 수입, 안전기준 미달 물품의 수입, 폐기물의 수출입, 멸종위기 동식물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 등
국가·사회의 안전보장	테러용 물품 밀수입, 전략물자 밀수출, 사회미풍양속 저해물품 수입

<표 2-2>에서와 같이 탈법위험 내용을 중심으로 불법무역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 불법무역의 주요 범주를 관세범죄(관세포탈 등), 부정무역범죄(지적재산권범죄, 원산지표시위반범죄 등), 마약범죄(마약밀수입 등), 사회안전범죄(테러용물품 밀수입, 전략물자 밀수출 등)로 설정하고자

한다. 재산도피, 자금세탁과 관련된 외환범죄는 물론 국경절차에서 중요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불법무역의 범주가 주로 실물 상품거래가 중심이 된 '무역'이 주가 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불법무역범주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불법무역의 범주에 따라 불법무역행위들을 분류함으로써 불법무역에 대한 일반적 유형화 및 그 세부적 유형화가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불법무역에 대한 동향 및 실태 분석이 일관성, 체계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2>의 탈법위험이 현재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이러한 탈법행위에 대한 과거의 단속실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 <표 2-3>은 탈법무역에 대한 단속 현황이다.

<표 2-3>에서 관세사범 단속 실적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주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조세 이외의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도 있다. 향후 관세는 FTA 확대 등에 따라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되거나 무세화 하게 되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밀수는 현저히 줄어들겠지만, 관세 이외의 내국세포탈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밀수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대부분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범칙사례는 최근 들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상표권 뿐 아니라 여타 지적재산권<sup>14)</sup>에 대해서도 보호요구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대외무역법위반사범의 주종은 원산지의 표시위반이다. 여기에는 원산지의 허위표시, 미표시, 부적정한 표시 등이 해당된다. 그 외 공정 무역질서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마약사범의 경우 마약 수요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유통소비과정에서 2차 범죄를 야기하는 만큼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표 2-3>에는 본 연구의 불법무역범주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국경절차에서 탈법위험에 포괄되는 외환범죄 현황이 나타나 있다. 외환사범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검거된 것이다. 외환사범은 현재 단순한 질서위반의 단속으로부터 점차 재산의 불법적인 해외도피나 자금세탁의 방지 등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사회안전위해사범은 총기 및 실탄류 등이 밀수입되다 적발된 실적이다. 아직까지

14) 대외무역법 제39조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할 때 국경절차에서 보호받는 지적재산권으로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지리적 표시권 등이 있다.

고성능 폭발물이 국경절차를 통해 발견된 적은 없으나, 이라크 파병과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경절차에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 2-3> 국경절차에서 주요 불법행위 단속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관 세 사 범	3,090	5,155	3,704	10,245	8,241
지재권침해사범	2,414	2,492	4,890	2,106	1,593
대외무역법위반사범	689	944	1,482	978	2,047
마 약 사 범 (인원수) <sup>1)</sup>	4,259 (82)	620 (99)	1,848 (120)	280 (221)	345
외 환 사 범 (건수) <sup>2)</sup>	23,109 (403)	52,565 (618)	22,037 (296)	36,625 (264)	36,984
사회안전위해사범 (건수) <sup>3)</sup>	31 (2)	33 (1)	18 (6)	13 (1)	n.a.

주: 1) 마약사범 단속 인원수는 경찰청 발표 통계

2) 외환사범 단속 건수는 경찰청 발표의 외화밀반출사범 통계만 포함

3) 사회안전위해사범 단속 건수는 경찰청 발표의 총기류 밀반입사범 통계만 포함

자료 : 관세청(<http://www.customs.go.kr>) ; 경찰청, 『경찰백서』, 2005.

### III. FTA 시대 한국의 무역환경

#### 1. 세계 FTA의 추세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현재까지도 그 확산추세가 계속하고 있다. 2005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되어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은 총 180건으로 이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이 1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비스협정이 31건, 개도국간협정이 21건, 관세동맹이 1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재화, 2005).

<표 3-1> 시기별 세계 지역경제협정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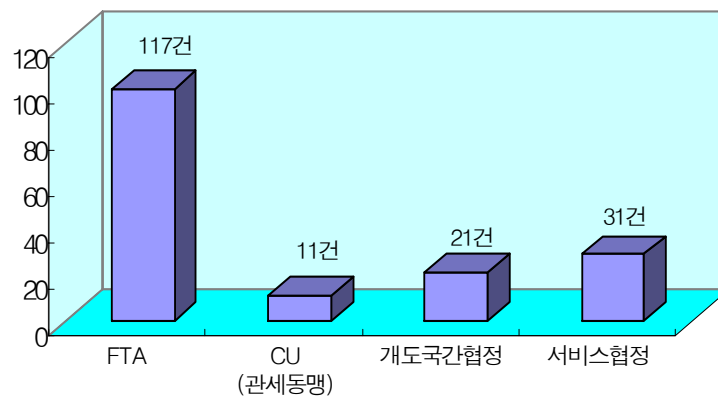
단위: 건수

	'55-'60	'61-'70	'71-'80	'81-'90	'91-'95	'96-'00	'01-'05.7
신 규	3	3	11	10	33	39	63
누 계	3	6	17	27	60	99	180

자료: 정재화, 「세계 FTA 추진현황과 우리의 대응」, 『관세와 무역』, 2005. 9.

<그림 3-1> 유형별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2005. 7월 현재)



자료: <표 3-1>과 동일.

2005년 1월 기준으로 162건이던 것이 2005년 7월까지 6개월 사이에 18건이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본-멕시코 FTA와 EFTA-튀니지 FTA 이외에도 유럽지역의 불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불가리아 등의 국가끼리의 FTA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경제협정은 지역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총 180건의 협정 중 120건이 1990년대 후반부터 체결되었으며 특히 2001년도 이후에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주요국의 FTA 추진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경우 대내적으로 경제효율의 제고, 대외적으로는 수출시장 확보 및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의 경쟁차원에서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멕시코와의 FTA가 발효된데 이어 최근 필리핀, 태국 등과의 협상을 타결지었고 현재는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ASEAN 전체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WTO 가입추진 및 약속이행에 치우쳐 FTA에는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홍콩, 마카오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하고 아세안과는 FTA 상품양허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호주와는 FTA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또한 한-중-일 및 한-중 FTA 추진을 꾸준히 제안하고 있으며, 인도와는 FTA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조속히 착수키로 하였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즉 아세안(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 ASEAN Free Trade Area)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아시아의 FTA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와 태국이 적극적이고 빠른 속도의 FTA 추진을 촉구하는 반면, 다른 회원국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10개 회원국 간 입장차이가 상존하고 있다. 중국과는 상품양허 협상을 완료해 2005년 7월 20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협상 진행 중이다.

인도는 동아시아와의 지역협력과 교역확대를 추구하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일환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이다. ASEAN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지역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대해 견제함과 동시에 활발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주대륙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경우 미주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세계적 무역자유화 촉진, 주요 우방과의 협력관계 강화 등을 목적으로 FTA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주자유무역지역(FTAA :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을 통해 미주대륙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함으로써 브라질을 중심한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에 대응함과 아울러 DDA 협상의 지연에 대한 대응으로 개방에 모범적인 거점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요르단, 호주 등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첫 FTA(1985년) 이후 1990년대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요르단,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으며 부시 정부 아래에서도 칠레, 호주, 중미 등 다수의 FTA를 성사시켰다.

멕시코는 FTA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한 국가 중 하나로 현재 FTA 체결국이 43개국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FTA 협상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유럽대륙에서 EU는 지역주의의 발원지이나 유럽국가와 非유럽국가와의 차별화된 FTA 전략을 추진 중이다. 유럽국가와는 FTA 수준을 넘어 유럽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경제적 공동체 완성에 주력하는 한편, 역외국가와는 1970년대부터 양자간 FTA를 적극 추진 중이다.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국가, MERCOSUR,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 혹은 추진 중이다. 한편, 1993년 이후 지속되어온 중동구 유럽 8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과 키프러스, 몰타 등 총 10개국이 2004년 5월 1일부터 EU 회원국으로 신규 가입하였다. 이로써 EU는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블록으로 확대되었다.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EFTA는 EU의 확대에 자극받아 중동구 유럽, 중남미, 지중해 연안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 중이다.

대양주에서 호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WTO 다자간협상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나 양자간 또는 지역간 무역협정을 통해 다자간 무역협정을 보완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아시아화 전략에 따라 아시아 국가와의 FTA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정재화, 2005; 채훈, 2003).

2006년에도 세계 전 지역에서 FTA 추진 흐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2005년도에는 세계 전지역에서 FTA 체결을 위한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13건의 FTA가 타결되었으며 미주지역에서 7건, 유럽지역에서 2건의 타결 실적을 보였다. 협상진행은 미주지역에서 21건, 아시아지역 18건, 유럽 6건, 대양주 5건이 있었다. 2005년 말 현재 국가별 FTA 타결국수를 보면 EFTA가 49개국으로 가장 많으며 칠레가 46개국, 멕시코가 43개국, EU가 39개국, 인도 27개국, 싱가포르 24개국, 태국 20개국, 미국 15개국, 중국 14개국 순이다(CUSTOMS OVERSEAS NEWS, 2006. 1. 26).

금년 2006년도에도 22건의 FTA 발효, 5건 이상의 FTA 타결 및 4건 이상의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어서 전년에 이어 활발한 FTA 추진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범태평양 전략적 경제공동체 협약(Trans-Pacific SEP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up>15)</sup>,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 : South Asian Free Trade Area)<sup>16)</sup>, 중국·파키스탄 선자유화(EHP : Early Harvest Program), 말레이시아·파키스탄 EHP가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3월초에는 한·싱가폴 FTA, 7월에는 한·EFTA, 한·ASEAN, 빔스텍(BIMSTEC :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sup>17)</sup> 협정이, 9월에는 일본·태국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또한 싱가포르·파나마와 일본-태국 FTA의 공식 서명이 각각 1월과 4월로 예정되어 있어 후속절차가 조속히 끝날 경우 연내 발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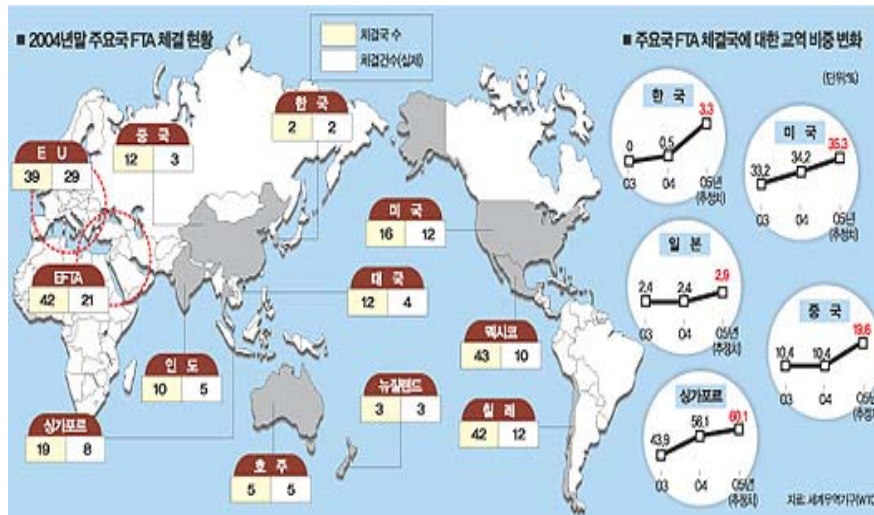
15)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간 FTA이다. 2005년 제주도에서 열린 21개국 APEC 회의에서 4개국 관련 장관들이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로 명명된 FTA를 2006년 1월부터 발효하기로 협약했는데, 이를 통해 90% 이상 상품이 이들 국가 간에 무관세로 교역될 전망이다.

16)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 South Asia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가맹국인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등 7개국 정상들은 2004년 1월 4-6일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SAARC 정상회담에서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를 2006년 1월 1일부로 창설기로 시한을 결정한 바 있으며, SAARC 가맹국들은 2006년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에 서명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서남아 7개국 정상들은 SAFTA 발효를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최대 2015년 12월말까지 역내간 관세를 0~5%로 인하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물품이동 자유화를 위한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금번 협정에 따르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향후 7년간에 걸쳐 관세를 0-5%로 인하하고, 스리랑카는 8년, 그 외에 방글라데시, 몰디브, 네팔, 부탄 등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나라들은 10년내에 관세를 0~5%로 인하하도록 하고 있다.

17)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부탄, 네팔 등 7개국 지역협력기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캐나다, 미국-아랍에미리트, 중국-걸프협력회의(GCC : Gulf Cooperation Council)<sup>18)</sup>, 중국-호주 FTA의 타결이 예상되며 연초에 개시되는 한국·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협상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2> 세계 주요국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새롭게 개시되는 협상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칠레 FTA 등이며, 현재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정부간 검토단계에 있는 한·MERCOSUR FTA, 일본·캐나다 FTA 등은 공동연구가 종료되면 협상 개시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국별 금년도 FTA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적극적인 FTA 추진 활동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금년 중

18) 1981년 5월에 페르시아만의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 아랍산유국이 역내(域內)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에 멕시코, 인도와 FTA 협상을 개시하고 ASEAN, 캐나다 등과의 FTA는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의 FTA가 금년도에 발효되며 캐나다, 칠레와는 협상 개시가, 베트남, 호주와는 공동연구 개시가 기대되는 등 FTA 추진에 적극적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 인도, Trans-Pacific SEP, 카타르와의 협정 발효가 기대되며 지난해 협상을 개시한 쿠웨이트, 파키스탄과는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1월부터 파키스탄과 EHP가 발효되었으며 연내에 칠레와의 FTA를 발효시킬 예정이며 GCC, 호주와의 협상타결이 예상된다. 인도의 경우는 SAFTA, ASEAN, BIMSTEC, 싱가포르, MERCOSUR, 칠레 등과의 협정 발효가 기대된다. 미국은 지난해 서명 및 비준 절차를 모두 마친 도미니카공화국-중미자유무역협정 (DR-CAFTA : Dominican Republic - 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sup>19)</sup> 및 바레인과의 FTA 발효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6).

이상에서와 같이 전개되고 있는 세계 각국들의 FTA 추진 동향과 체결내용에 대한 주요 특징은

첫째, 전략시장의 확보 및 역차별 완화를 위해 지역개념을 초월한 지역횡단적인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중동, 미국-싱가포르, EU-멕시코, EU-칠레, 일본-멕시코간 FTA협정이나 협상이 대표적이다.

둘째, 세계 주요 경제블럭들은 가맹국 추가를 통해 역내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EU는 이미 가맹국을 10개국 추가시켜 25개국으로 확대하였으며, 미주지역은 NAFTA 3개국에서 수년 내 미주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34개국으로 늘어갈 전망이다.

셋째, FT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의 시각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FTA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싱가포르·인도·태국·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다양한 인종과 문화, 경제발전단계상의 상이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국가간 또는 지역횡단적인 FTA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넷째, FTA 협정 포괄 범위 및 내용이 최근 확대되고 심화되어 서비스, 투자,

19) 미국과 중남미 5개국(온두라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은 2003년 1월 8일 양 지역간 FTA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4개국과는 2003년 12월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코스타리카와는 2004년 1월 협상 타결). 또한 미국은 도미니카 공화국을 미-CAFTA FTA에 포함시키기 위해 협상을 시작해 2004년 3월 타결하였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환경, 인력이동 분야 등도 포함되는 경향이 있는데 1993년 체결된 NAFTA가 대표적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FTA 열풍이 불고 있는가. 크게는 지역주의에 반대해 온 미국이 1990년대부터 FTA중시로 통상정책을 선회한 점, WTO 다자간 협상 속 성장 단시간 내 포괄적인 분야에 일괄타결이 어려운 점, NAFTA나 EU 등의 경험에서 볼 때 FTA로 경제가 활성화되며 정치외교관계도 공고히 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채훈, 2003).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FTA 체결국간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실현과 역내국 기업 간 경쟁촉진으로 대외경쟁력이 제고되어 무역과 투자가 더욱 촉진되는 한편 역외국가에는 수출시장 상실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범세계적인 FTA네트워크 확대심화로 무역창출 효과가 그만큼 커지고 있어 FTA 비참가시 소외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일례로, 세계최대 자유무역지대인 NAFTA의 경우 역내국인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공히 1994~2001년간 역내교역증가율이 역외교역증가율을 상회하였다. 특히 경제규모가 작고 인건비가 낮은 멕시코가 북미시장진출을 위한 제조생산기지로 변모함에 따라 연평균 역내교역은 18.3% 증가하여 역외교역증가율을 2배정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0)</sup>

둘째, FTA로 개방이 촉발되어 해당 국가의 경제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

EU의 경우 인력,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20) 이처럼 FTA 체결로 인한 체결국간 교역 비중은 대부분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6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로 교역비중이 0.5%로 증가했으며 2006년 발효될 싱가포르, EFTA, ASEAN을 고려하면 교역비중은 10.8%로 무려 10.3%포인트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은 2006년 발효될 중미 5개국 및 도미니크 공화국과의 FTA, 바레인, 오만 등을 고려할 때, 교역 비중은 2005년 35.3%에서 2006년 36.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멕시코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교역 비중이 0.5%포인트 증가했으나 2006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과의 FTA가 발효 예정되어 있어 수출 및 교역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비중은 2005년 3.8%에서 2006년 11.6%로, 교역 비중은 2.9%에서 10.8%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2005년 7월부터 ASEAN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04년의 10.4%에서 2005년 19.6%로 교역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2006년 중 파키스탄, 칠레와의 FTA 발효가 예정되어 있어 교역 비중은 19.6%에서 19.8%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는 2006년 Trans-Pacific SEP 및 중국, 인도 등과의 FTA가 발효될 예정으로 교역 비중은 66.8%에서 75.0%로 8.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2005년 중 파나마, 카타르, Trans-Pacific SEP등과 협상을 타결시켰으며 2006년 동 협정의 발효가 예정되어 있어 2006년 수출과 교역 비중이 모두 3%포인트씩 증가한 55.6%와 56.7%를 기록할 것으로 파악됐다(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6).

경쟁이 촉진되어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는데 인구비중은 전세계의 2.4%에 불과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 2001년 기준으로 이미 전세계 수출의 36.7%, 수입의 34.7%를 점한 바 있다.

셋째, FTA로 시장이 확대되고 투자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역외국차별을 우회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크게 확대되는데 이는 특히 역내생산거점 확보시 실질적인 무관세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NAFTA·EU·칠레 등이 모두 FTA로 FDI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EU는 2001년 FDI 유입액이 1992년 당시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경험이 있다.

끝으로, FTA로 역내 국가간 불합리한 무역투자규제가 개선되고 투명성이 향상되어 통상마찰이 감소 또는 예방이 용이해지고 FTA로 구축된 기본적인 신뢰 틀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통상마찰을 상호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상호협력관계가 정치·안보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많다.

즉 NAFTA 회원국인 미국은 철강세이프가드 조치대상에서 멕시코와 캐나다 산을 제외함으로써 역외 이해당사국들의 반발을 산 사례가 있으며, 호주-뉴질랜드나 칠레-캐나다 FTA는 체약국간 반덤핑제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EU의 경우 개별국가로 흩어져 있었을 때는 약했지만 서로 통합된 이후에는 미국에 버금가는 정치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멕시코는 미국 등과 NAFTA를 체결한 이후 국제정치무대에서 지위도 현저히 격상되었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FTA는 정치경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 2. 한국의 FTA 추진과 탈법위험

### 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1) 한국의 FTA 추진 목표와 전략

우리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관세철폐는 물론, 서

비스, 투자, 지적권, 정부조달,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상국 선정에 있어서는 경제·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하되, 단기적으로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 거대·선진경제권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 만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선 협상 개시가 가능한 국가를 선정하여 FTA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EU, ASEAN 등 5개 국가군이 우리 전체 교역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거대경제권과의 경우 교역규모가 큰 만큼 FTA 체결시 그 파급효과도 막대하여 국내적으로 사전에 취약분야에 대한 대비 및 제도의 정비를 위해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 ASEAN처럼 협상 중에 있는 국가도 있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우선 주변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교두보를 구축하거나 민간연구기관간의 사전 연구를 통해 FTA 체결을 위한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국내외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브릭스(BRICs : Brazil, Russia, India, China) 등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을 통해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MERCOSUR나 인도 등 향후 큰 소비시장이 될 이들 경제권과의 FTA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FTA 정책은 그 역사가 짧다. 따라서 FTA 추진 전략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측면이 크다. 순차적으로 주요 교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우리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치러야 할 기회비용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발효시킴으로써, 각 협상별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

명성을 제고하고, FTA 추진과정에 각계 전문가와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

<표 3-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기 체 결	협상 중	산학관 연구
국가	칠레 (2004.4.1 발효)	일 본(2003.12, 개시)	멕시코
	싱가포르 (2004.11 타결)	ASEAN(2004.2, 개시)	인 도
	EFTA(2005.7 타결)	캐나다(2005.7, 개시)	Mercosur
		미국(2006.2 개시)	중국

자료: 정재화, 「세계 FTA 추진현황과 우리의 대응」, 『관세와 무역』, 2005. 9.

하고 있다. 한-칠레 FTA 체결 직후 각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국론이 분열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FTA 추진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한 것이다(성완진, 2005).

## (2) 한국 정부의 FTA 추진 현황과 계획

우리 정부는 FTA 추진로드맵에 따라 주요 유망대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의 발효에 이어, 2004년 11월 싱가포르 및 2005년 7월 EFTA와의 FTA가 각각 타결되고 2006년 2월 미국과 협상이 출범되는 등 큰 차질 없이 국가간 협상 및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표 3-2>. 우리 정부의 구상대로 FTA가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위한 교두보 구축, 거대경제권 자체 및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 등에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2006년 FTA 협상 일정을 개관하면 한-싱가포르 FTA의 성공적인 발효, 미국 및 캐나다와의 협상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각각 ASEAN, EU 및 미국 등 거대경제권에 대한 교두보가 확보될 것이다<표 3-3>. 거대경제권 자체와의 FTA 추진의 경우, ASEAN과의 협상이 상당히 진척될 것이고, 미국과는 2005년 상반기에 마무리 된 정부간 실무 예비협 의 결과

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FTA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며, 중국과도 금년부터 개시될 민간 공동연구를 통해 민간차원에서의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 MERCOSUR, 멕시코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BRICs로 대표되는 신흥유망 시장과의 FTA 추진 기반이 놓여질 것으로 보인다.

<표 3-3> 한국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 한-미	2월 3일 FTA 협상 출범
▪ 한-인도	3월 23-24일 1차 협상 개최
▪ 한-싱가포르	3월 2일 발효
▪ 한-ASEAN	4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7월 상품무역협정 발효, 연내 타결 목표
▪ 한-EFTA	7월 협정 발효 예상
▪ 한-캐나다	2월 13-17일 4차 협상, 연내 타결 목표
▪ 한-멕시코	연초 SECA 협상 개시, 연내 타결 목표
▪ 한-MERCOSUR	5월 공동연구 종료 예정
▪ 한-중국	연말까지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진행 예정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5년 세계 FTA 추진 동향 및 2006년 전망』, 2006.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발효된 칠레와의 첫 FTA를 출발점으로 현재 많은 지역, 국가들과 FTA를 추진 중이다. 1998년 11월에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9년 12월에 개시된 한-칠레 FTA는, 2002년 10월에 타결되어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발효 이후 1년간 양국간 교역량이 전년대비 48% 증가하는 등 FTA체결의 이익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 공산품의 대칠레 수출은 47% 증가하였고,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의 수출이 각각 58%, 250% 증가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성완진, 2005).

한-싱가포르 FTA는 2004년 11월에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2005년 8월 양국간 정식서명을 마쳤으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금년 3월 2일 발효되었다. 특히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도 우리나라

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토록 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의 선례를 마련하게 되었다.<sup>21)</sup>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2004년 공동연구를 개최한 후 2005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 2005년 7월에 협상을 타결하였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이자, 유럽지역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인 동시에 복수의 회원국을 가진 경제권과 체결한 첫 FTA이다. 포괄적인 FTA를 통해 양측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에 합의하였으며, 우리나라로서는 EU 시장 진출의 소중한 교두보를 갖게 되었다. 2006년 상반기 중 개별국가별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2006년 하반기 중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일본과의 FTA 협상은 현재 교착상태이다. 일본과는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의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시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FTA 공식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2월 까지 총 6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의 양허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이 매우 낮은 수준의 농수산물 양허계획을 가지고 협상에 임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런 기초 하에서 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일본 측이 우리가 수용가능한 안을 가져올 때까지 냉각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측은 농수산물 분야 양허를 포함하여 비관세조치의 개선, 정부조달 시장 진출확대 등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이 반영된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지만 한국 내에서 한일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다가 최근 악화된 양국관계 등으로 협상을 재개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ASEAN과는 2004년 FTA 공식협상 개시를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여,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2005년부터 2년 내 타결을 목표로 공식 FTA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하였다. 2005년에는 상품분야를, 2006년에는 서비스·투자 분야를 타결하기 위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금년 중 상품 분야를 타결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반면 아세안 측은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 느긋한 입장이어서 연내 타결이 반드시 쉽지만은

21) 싱가포르와의 FTA 발효에 따라, 전체 91.6%에 해당하는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보게 되며, 개성공단 생산제품도 우리나라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보게 되었다. 또한 한-칠레 FTA 등에서도 같이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신고시 세관에 서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했던 것과는 달리 한-싱 FTA 에서는 수입신고시 서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단, 우리정부는 우회 및 위장 수입물품 등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조사를 하거나 싱가포르세관을 통한 간접 검증 수행하는 등 협정 및 특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관세청 보도자료, 2006. 3. 8).

않은 상황이다. 특히 상품양허 방식, 원산지 규정,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문제 등에 있어 양국간 의견차이가 있는데다가 아세안 측이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 오래 걸리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캐나다와는 2005년 상반기 2차례의 예비협의를 거쳐 7월 국가간 협상이 출범하였으며 같은 달 제1차 협상을 가졌다. 한-캐나다 FTA를 통해 북미 시장으로의 안정적 진출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한 이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전문직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추진시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의 캐나다 진출 기회가 열리는 등 서비스 분야의 교역 촉진 및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멕시코와는 2004년 5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여, 매 2개월마다 공동연구를 가진 바 있으나 멕시코 측 산업계의 반발로 협상개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한-멕시코 양국은 2006년 2월 7일-9일간 서울에서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sup>22)</sup>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MERCOSUR와는 2004년 11월 MEROSUR와의 무역협정(Trade Agreement)의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2차례의 공동연구를 가진 바 있다.

인도와는 2004년 10월 한-인도 정상회담시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그룹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2005년 상반기에 3차례의 공동연구회의를 개최했으며, 1년간 실시 예정이다. 한·인도 양국은 2006년 3월 23-24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CEPA 체결 추진을 위한 공동작업반(JTF : Joint Task Force) 제1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1년간 총 4회에 걸쳐 추진했던 한·인도 공동연구그룹(JSG) 회의 결과로 채택된 공동연구 최종보고서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CEPA 체결 협상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상품·서비스 자유화 범위 및 방식, 양허수준 등을 적절히 규정하고 투자,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CEPA 체결을 추구하여, 2007년말 이전에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원칙적으

22) SECA는 양국간 공동연구과정에서 FTA 추진을 희망하는 우리와 산업계의 반대에 봉착한 멕시코 측간의 이견을 절충하는 대안으로 멕시코측에 의해 제시되었다. SECA는 라틴아메리카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단계로 추진된 사례가 있는 경제보완협정(ECA)과 유사한 협정이다(연합뉴스 2006. 2. 9).

로 합의하였다.

중국과는 2004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양국 회담시 2005년부터 동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약 2년간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에 공동연구가 실시될 예정이다.

미국과는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이 출범함으로써 미국시장에 대한 안정적 접근, 통상마찰 해소, 국제표준(Global Standard) 완비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양국은 2005년 2-4월간 3차례의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FTA가 서로에게 커다란 이익이 된다는 공통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이후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 등을 통해 FTA 협상 출범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왔다. 최근에는 양국 정부가 FTA 협상 출범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조율을 마침에 따라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게 된 것이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 신인도가 향상되어,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 비용 감소 및 해외차입 활성화로 투자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FTA 협상과정에서 시장개방 이외에 국제규범 및 선진국 제도와 관행의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협상 및 수용과정을 통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Global Standard를 완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경제위기시 대외개방 및 Global Standard의 적극도입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룩한 바 있다.

또한 한·미 FTA 협상이 추진되면 협상과정에서 한·미간에 잠재되어 있는 통상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이들 중 상당 부분이 FTA에 개선·포함됨으로써 양국간 통상마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은 종래의 일방적 무역조치 대신에 쌍무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함에 따라 통상마찰의 수위와 강도도 한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및 진행중인 한·ASEAN FTA가 조기에 완성될 경우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 가능성이 증대하며, 이를 통하여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그러나 스크린 쿼터, 쇠고기 수입개방 등 한-미 FTA로 인한 피해 예상부문의 개방전략과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이 경우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역 및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더라도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CUSTOMS OVERSEAS NEWS, 2006. 2 9).

## 2) FTA 추진과 탈법위험

우리나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로 대표되는 전후 세계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의 하나로서, 1967년 GATT에 가입한 이래 30여년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하였다. 반개방 수출주도의 전략 하에 세계경제의 후발주자로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왔으며 그 결과 고도 압축성장을 이룩하여 한국전쟁 후 최빈국 대열에서 탈피, 최근 선진경제권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주의의 경험과 성과에 근거하여 과거 우리나라는 GATT/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며 지역주의가 다자무역체제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더 제도화된 WTO체제 출범 이후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가속화되었으며, 특히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최근에는 일본, 중국 등 그동안 지역주의 움직임에 소극적이었던 동아시아에서도 FTA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일본-싱가포르, 일본-멕시코, 중국-홍콩, 중국-마카오 등의 FTA가 출범하고, 특히 ASEAN을 중심으로 한 FTA가 중국, 한국, 인도 등 주요국들과 연결되고 있어, 역내국 간에 FTA를 매개로 한 합종연횡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구주 및 미주 지역에서도 지역협정을 중심으로 경제통합이 지속되어, 유럽연합(EU)은 동유럽 10개국이 가입한 25개국의 경제통합체로 확대되었고, 미국은 NAFTA에 이어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추진하는 등 수십 개의 국가를 포괄하는 거대경제권이 형성 중에

있다.

이제 국제통상의 장에서 ‘지역주의의 확산’이라는 현상은 기정사실이며, 각국은 지역주의를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류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며, 과거 개발연대의 압축성장의 기술을 FTA 맥락에서 재현하는 것이 절대적 과제가 되었다.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2004년 이미 70%를 초과함으로써<sup>23)</sup>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전략과 같이 국가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FTA를 통해 우리의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시스템이 선진화되고 경제체질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개방의 혜택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국가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여 선진형 통상국가로 가는 기반이 바로 개방이며 FTA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성완진, 2006).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체결국간의 교역 비중이 대부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6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로 교역비중이 0.5%로 증가했으며 2006년 3월 2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와, 향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과의 FTA를 고려하면 그 교역비중은 10.8%로 무려 10.3%포인트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sup>24)</sup>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23) 한국은 2004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3%로 나타났다. 이 중 GDP와 수출규모를 비교한 수출의존도가 37.3%, GDP와 수입규모를 비교한 수입의존도가 33%였다.

24) 미국은 2006년 발효될 중미 5개국 및 도미니크 공화국과의 FTA, 바레인, 오만 등을 고려할 때, 교역 비중은 2005년 35.3%에서 2006년 36.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멕시코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교역 비중이 0.5%포인트 증가했으나 2006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과의 FTA가 발효 예정되어 있어 수출 및 교역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비중은 2005년 3.8%에서 2006년 11.6%로, 교역 비중은 2.9%에서 10.8%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2005년 7월부터 ASEAN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04년의 10.4%에서 2005년 19.6%로 교역

는 향후 50여개국과 FTA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 체결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5-10년 내에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약 70%가 FTA 체결국가와의 교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정재호, 2006).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자유무역의 대세와 교역증대에 따라 탈법무역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공정무역질서 확립과 선진통상국가 실현의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하여 관세를 불법 환급받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감시 단속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FTA 시대에 있어서는 특혜관세 제도를 악용한 우회수입과 시장개방을 악용한 지적재산권 위반, 원산지 표시위반 범죄를 방지하는 데에도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불법무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단속체계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현재 외부 환경변화로선 전 세계적인 FTA 확산 하에 물적/ 인적 교류절차의 간소화 추세, 선진통상국가 건설과 동북아물류 중심 계획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FTA 추진 정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불법무역 범죄대응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바, 그것은 수출입 물류/ 출입국자의 급증과 함께 발생하는 탈법무역 및 테러 위험도의 증가, 불법무역 차단 및 사회안전(대 테러) 확보 요구<sup>25)</sup>, 법규준수 (compliance) 강화/ 불법교역물품·유해물품에 대한 감시단속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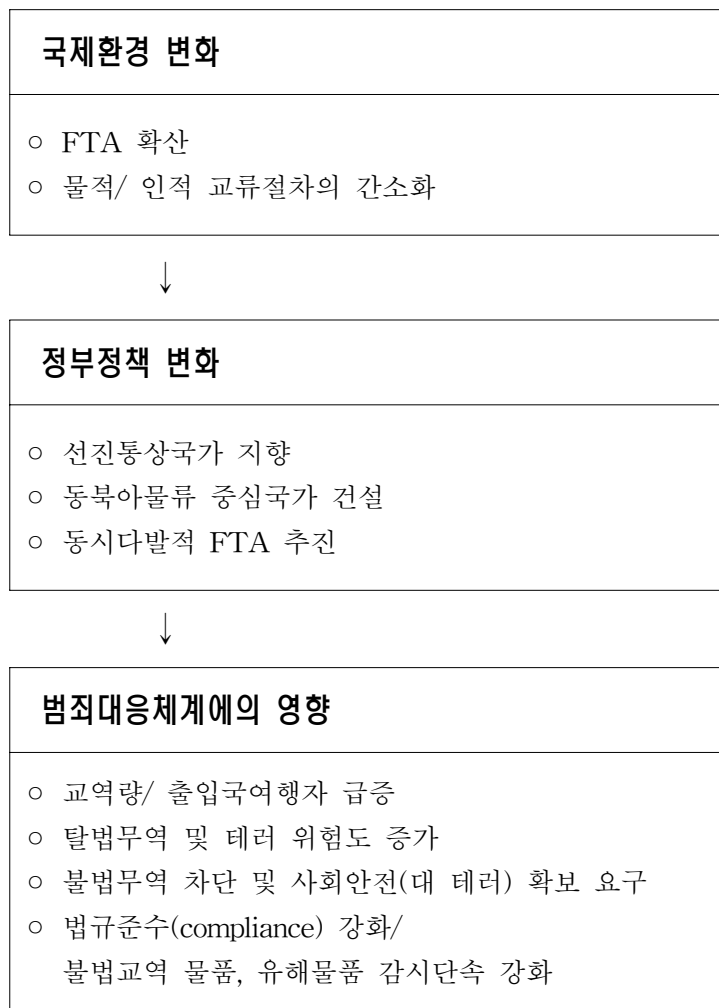
그러나 범죄예방 및 단속업무는 국가경제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업무 수행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즉 사회적으로는 불법무역과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한편으로 신속 통관, 교역 원활화라는 상반된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 FTA 체결 확산과 경제성장 등으로 수출입 물량과 출입국자가 증가하고, 해외자금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 및 불법물품에 대한 철저한 감시 요구와 함께 국경절차에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2006년 중 파키스탄, 칠레와의 FTA 발효가 예정되어 있어 교역 비중은 19.6%에서 19.8%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는 2006년 Trans-Pacific SEP 및 중국, 인도 등과의 FTA가 발효될 예정으로 교역 비중은 66.8%에서 75.0%로 8.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2005년 중 파나마, 카타르, Trans-Pacific SEP등과 협상을 타결시켰으며 2006년 동 협정의 발효가 예정되어 있어 2006년 수출과 교역 비중이 모두 3%포인트씩 증가한 55.6%와 56.7%를 기록할 것으로 파악됐다(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6).

25) 세계관세기구(WCO)도 테러와의 전쟁을 각국 세관의 최우선 과제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구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요구에 부응하면서 변화된 국제적, 정책적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범죄대응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3-3> FTA와 범죄대응체계로의 영향



## IV. 불법무역의 일반 유형 및 실태

### 1. 불법무역의 일반 유형

본 연구에서는 불법무역의 주요 범주를 관세범죄, 부정무역범죄, 마약범죄, 사회안전범죄로 설정하였는 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역의 일반적 유형 역시 관세범죄, 부정무역범죄, 마약범죄로 구분하고 먼저 이들을 중심으로 불법무역을 개관하여 보기로 한다. 부정무역범죄에는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침해 등 지적재산권범죄와 원산지표시위반 등 대외무역법위반범죄를 포함한다. 사회안전범죄의 경우에는 통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의 단속사례와 함께 마지막에 언급하기로 한다. 관세범죄, 부정무역범죄, 마약범죄 등 불법무역의 최근 동향을 총괄하여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표 4-1> 불법무역거래사범 검거실적 일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4년 1-12월		2005년 1-12월		2006년 1-2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관 세 사 범	2,187	1,024,457	2,279 (4)	824,077 (△21)	326 (16)	100,386 (124)
부정무역사범 <sup>1)</sup>	733	308,441	633 (△14)	364,052 (18)	87 (△11)	114,210 (214)
마 약 사 범	291 (221) <sup>2)</sup>	28,011	139 (△52)	34,510 (23)	15 (△17)	976 (999)
총 계	3,211	1,360,909	3,051 (△5)	1,222,639 (△11)	428 (8)	215,572 (165)

주: 1) 부정무역사범 : 지적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2) 2004년 마약사범 검거실적 중 ( )는 경찰청 발표 단속실적(명수), 그 외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자료: 관세청(<http://www.customs.go.kr>) ; 경찰청, 『경찰백서』, 2005. 2006.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도 불법무역거래사범 검거 건수는 총3천 51건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약 1조 2천 22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 검거 건수와 금액 대비 각각 5%와 11% 감소한 것이다.

이중 관세사범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정상화물과 혼적하여 은닉하는 수법, 컨테이너 검색기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화물을 가장한 컨테이너 바꿔치기 수법 등에 의한 지능적인 밀수입 사건을 적발하였다. 이밖에도 고전적인 해상분선 밀수 등에 의한 다양한 수법의 밀수입 사건을 적발하여 검거하였다. 액수면에서 볼 때 CPU 등 기계기구류 적발금액(1,912억원) 및 '불법수입농축수산물특별단속'에 따른 농축수산물 적발금액(1,376억원)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적발 금액은 21% 감소하였으며 건수는 4% 증가하는데 그쳤다.<sup>26)</sup>

부정무역사범은 2005년도에 가짜 시계류 및 명품 가방 등 상표법 위반물품 밀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입의류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는 원산지위반 적발금액은 증가하고 있어 전년 대비 건수는 14% 감소한 반면, 적발금액은 18% 증가하였다.

마약사범은 2005년도에 중국 여행자의 휴대품을 이용한 메스암페타민 밀수와 미국, 캐나다에서 도착하는 국제우편화물을 이용한 대마초 밀수의 적발이 증가하였다. 살빼는 약 등의 적발감소로 전체 마약 적발실적은 전년대비 건수 52% 감소하였으나 주요 마약류 밀수적발실적이 증가함으로써 적발금액은 23% 증가하였다. 경찰청 발표에서도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사범이 2003년 120명, 2004년 221명 적발되는 등 1990년대 보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경찰청, 2005).

금년 2006년에 들어서 2월까지의 불법무역거래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검거 건수 428건, 적발금액 2,156억원으로 나타나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의 242건, 1,143억원에 대비하여 건수는 8%, 적발금액은 165%가 증가하였다.

관세사범은 일본산 활꼬막 등 농수산물 적발(149억원)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지난 1월 외국적 나용선을 가장한 선박밀수입(545억원) 대형사건 적발에 따라 건수 326건, 적발금액 1,004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의 193건, 222억원에 대비하여 건수 16%, 금액 124% 각각 증가하였다.

부정무역사범은 금년 들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 결과 핸드백 등 가죽제품(314억원), 의류(83억원), 담배(50억원), 시계(45억원) 등 상표법위반 적발 실적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중국산 리모콘 원산지미표시(71억원) 및 중국산

26) 2005년 기계류, 농축수산물 적발금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적발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2004년도에 2,630억원에 달하는 병커씨유 밀수 적발 사례가 있었던 데에 기인한다.

폴리브덴철 한국산 위장수출(2억), 중국산 의류의 한국산 위장수입(488억원) 등 원산지표시위반에 의한 대외무역사범 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건수가 11% 감소하고, 적발금액은 214%로 대폭 증가하였다.

마약사범은 중국으로부터 여행자, 국제우편을 통한 메스암페타민 밀수,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을 통한 대마초 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살빼는 약 및 북방감초편 검거실적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하여 건수 기준으로는 17% 감소하였으나, 적발금액은 무려 999%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위 <표 4-1>에서 개관한 관세·부정무역·마약사범 검거 동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관세사범은 크게 불법수입과 불법수출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2005년에 불법수입은 2,254건 7,445억원, 불법수출은 25건 796억원 상당액을 적발 검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수입은 금괴, 인삼류, 농산물 등의 직접밀수 및 관세포탈과 기계기구류 부정수입(허위신고)이 주로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건수는 5% 증가, 적발금액은 26% 감소하였다. 불법수출은 무등록(도난)차량 및 아가리쿠스버섯분말 밀수출 행위 등이 적발되었으며 전년 대비하여 건수는 47% 감소하고, 적발금액은 195% 증가하였다.

지적재산권사범은 2005년에 389건 1,593억원 상당액을 적발 검거하였으며, 주요품목은 시계(531억원), 의류(396억원), 가방류(338억원) 등 상표범위반에 의한 것이다. 위조된 주요 유명상표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샤넬이 2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로렉스(168억원), 루이 뷔통(142억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관세청뉴스, 2006. 2. 6).<sup>27)</sup> 위조상품 유통은 국가경제의 순환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광범한 피해를 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MP3플레이어, 휴대폰, 에어컨, 자동차 등 경쟁력이 높은 제품의 경우 중국 등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돼 우리 기업에게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위조상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발생

27)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200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체 교역량의 7%인 5400억달러(약 524조원) 어치의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위조상품들은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위조상품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위조상품이 이른바 '저위험-고수익'(Low Risk-High Return)의 고부가가치 수익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위조상품 제작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범죄조직에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하고 있다. 최근에 국내에 유통되는 가짜 의약품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가짜 자동차 부품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국정브리핑, 2006. 2. 7). 이러한 위조상품 사범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사범은 2005년에 전년 대비 건수로는 10%, 적발금액은 24% 각각 감소하였다.

대외무역사범은 2005년에 244건 2,047억원 상당 규모를 검거하였는 바, 적발된 주요 품목은 의류(1,004억원), 폴리브덴철(380억원), 운동구류(125억원) 등 원산지위반이 73%, 수출입가격조작 등 기타 27%로 구성되었다. 2005년 대외무역사범은 전년대비 건수는 14% 감소하고, 금액은 109% 증가하였다.

마약사범은 2005년에 139건 345억원 상당액을 검거하였다.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하여 건수는 52%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등 주요 마약류의 대형밀수 적발로 금액은 23% 증가하였다.

금년 2006년에 들어서 2월까지의 불법무역거래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관세사범은 2월까지 불법수입 323건 1,003억원, 불법수출 3건 48백만원을 검거하였다. 주요 품목은 선박류(545억원), 농수산물(149억원), 차량류(71억원), 의류(50억원), 식료품(42억원) 등이며, 전년 동기 대비로 건수는 16%, 적발금액은 12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적재산권사범은 금년 2월까지 60건, 515억원 상당액을 검거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핸드백·가죽제품, 의류, 담배, 시계 등 상표법위반 물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적재산권침해물품 특별단속의 영향으로 인해 검거된 실적이 늘어나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5%, 적발금액은 77% 각각 증가하였다.

대외무역사범은 금년 2월까지 27건, 628억원 상당액을 검거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의류(499억원), 기계기구류(87억원), 신변잡화(34억원) 등 원산지위반 물품이다. 이는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건수는 34% 감소하고,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751% 대폭 증가한 것이다.

마약사범은 2월까지 15건 10억원 상당규모를 검거하였으며, 이중 9건이 고가의 메스암페타민으로 검거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살빼는 약의 검거기준 완화에 따른 적발실적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7% 감소하였으나,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999% 대폭 증가한 것이다.

&lt;표 4-2&gt; 불법무역거래사범 검거실적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4년 1-12월		2005년 1-12월		2006년 1-2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관세사범	불법수입	직접밀수	1,190	349,333	1,492 (25)	201,862 (△42)	193 (16)	59,831 (802)
		부정수입	809	646,389	637 (△21)	542,001 (△18)	115 (25)	40,210 (6)
		시중단속	141	1,778	125 (△11)	643 (△64)	15 (△25)	297 (149)
		소 계	2,140	997,500	2,254 (5)	744,506 (△26)	323 (16)	100,338 (124)
	불법수출		47	26,957	25 (△47)	79,571 (195)	3 (50)	48 (682)
	합 계		2,187	1,024,457	2,279 (4)	824,077 (△21)	326 (16)	100,386 (124)
부정무역사범	지재권사범 <sup>1)</sup>		451	210,566	389 (△10)	159,329 (△24)	60 (5)	51,456 (77)
	대외무역사범		282	97,875	244 (△14)	204,723 (109)	27 (△34)	62,754 (751)
	합 계		733	308,441	633 (△14)	364,052 (18)	87 (△11)	114,210 (214)
마약사범			291	28,011	139 (△52)	34,510 (23)	15 (△17)	976 (999)
총 계			3,211	1,360,909	3,051 (△5)	1,222,639 (△11)	428 (8)	215,572 (165)

주: 1) 지적재산권사범: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사범 등

2) 대외무역사범: 원산지사범 등

3)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자료: 관세청(<http://www.customs.go.kr>)

불법무역거래사범의 검거실적을 검거단서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4-3>과 같다. 2005년도 검거단서별 검거실적은 정보분석에 의해 5,515억원 상당규모가 검거되었으며 이것은 전체검거에서 가장 높은 45%의 검거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 이러한 정보분석에 의한 검거는 전년 대비하여 금액기준 395%가 증가한 것이다. 그 밖에 인지 3,078억(25%), 조사의뢰 1,776억원(15%), 밀수신고 1,433억원(12%) 등은 전년 대비 적발금액이 감소하였다.

정보분석에 의한 조사가 정착되면서 단순 인지, 조사의뢰 및 세관 외 기관이첩 등 외부 단서에 의한 사건검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2006년에 들어서 2월까지 검거단서별 검거실적을 살펴보면 정보분석 1,336억원(62%), 조사의뢰 470억원(22%), 밀수신고 182억원(8%), 인지 128억원(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 들어 정보분석에 의한 검거실적은 전년 동기 금액대비 809%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정보분석과 조사의뢰 사건 검거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세관의 자체적발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t;표 4-3&gt; 검거단서별 불법무역거래사범 검거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4년 1-12월		2005년 1-12월			2006년 1-2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구성비	건 수	금 액	구성비
인 지	724	752,469	613	307,756 (△59)	25.2	67	12,841 (△11)	6
정보분석	344	111,367	442	551,482 (395)	45.1	83	133,587 (809)	62
밀수신고	338	167,728	365	143,291 (△21)	11.7	60	18,204 (3)	8
조사의뢰	1,507	210,279	1,479	177,577 (△16)	14.5	198	46,966 (88)	22
타기관 이첩	236	42,637	119	26,719 (△37)	2.2	17	3,828 (△31)	2
기 타	62	76,429	33	15,814 (△79)	1.3	3	146 (△96)	0
합 계	3,211	1,360,909	3,051	1,222,639 (△11)	100	428	215,572 (165)	100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금액대비, %)

자료: 관세청(<http://www.customs.go.kr>)

불법무역거래사범의 검거실적을 검거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4-4>와 같다. 2005년도 기관별 검거실적은 세관이 3,020건을 검거하였고, 금액기준으로 1조 2,022억원 상당액을 적발하였다. 이러한 검거실적은 전년에 대비하여 금액기준으로 1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 밖에 검찰과 경찰 등에 의해 31건 205억원 상당규모를 검거하였다.

금년 2006년에 들어서 2월까지 기관별 검거실적을 살펴보면 세관이 424건, 2,144억원 상당액을 검거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금액대비 164% 증가한 것이다. 이 외에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 4건, 12억원 상당액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4> 검거기관별 불법무역거래사범 검거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04년 1-12월		2005년 1-12월			2006년 1-2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세관	3,160	1,082,693	3,020	1,202,171 (10)	98.3	424	214,407 (164)	99
검찰	18	274,757	7	3,320	0.3	0	0	0
경찰청	12	1,872	10	655	0.1	1	1	0
해양경찰	12	878	3	3	0.0	3	1,164	1
기타	9	709	11	16,490	1.3	0	0	0
합계	3,211	1,360,909	3,051	1,222,639 △11	100	428	215,572 (165)	100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금액대비, %)  
자료: 관세청(<http://www.customs.go.kr>)

검거대상국가별로 불법무역거래사범 검거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5>와 같다. 검거대상국가는 중국과 중국 내 홍콩으로부터의 불법무역비중이 매우 높아 2005년에 그 비중이 각각 40%와 2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규모는 중국의 경우 1,875건 4,199억원, 홍콩의 경우는 114건 2,562억원에 달하고 있다. 다만 중국으로부터의 밀수입은 전체 밀수입 건수의 63%, 전체 밀수입 금액의 40%를 구성하고 있으나, 홍콩으로부터 대형 금괴 밀수입(536억원) 및 CPU와 메모리모듈 부정수입(1,721억원) 적발의 영향으로 금액비중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중국 밀수금액은 42% 감소하였다.

중국과 불법무역에서 주요 품목은 견고추 등 농산물과 인삼, 비아그라 등의 직접밀수 및 농산물, 의류, 직물류, 의료광학기기 등의 관세포탈, 의류, 가짜시계 등 지재권침해물품의 밀수입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콩은 금괴 밀수입(536억원) 및 CPU와 메모리모듈의 과세가격 허위신고(1,721억원) 적발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하여 건수는 1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금액은 915%로 급증하였다.

미국은 아가리쿠스버섯분말 밀수출입(678억원) 및 흰옥수수 관세포탈(365억원) 등 대형사건 발생으로 전년 대비하여 2005년 검거건수는 22%, 금액은 453% 증가한 196건 1,742억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불법무역 주요 품목을 일별하면 중국은 주로 마약, 농산물, 시계, 의류, 발기부전치료제, 가짜상품 등이고 미국은 농산물(옥수수), 골프채, 기계기구류, 의약품 등이다. 또 홍콩은 금괴, 가짜상품, 녹용, 기계기구류(CPU등)이고 독일은 기계기구류(크레인) 물품이 불법무역거래되고 있다.

금년 2006년에 들어서 2월까지 검거실적을 살펴보면 중국은 총 밀수입 금액의 45%를 구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8%, 금액은 110%가 증가하였다. 농수산물과 인삼류, 비아그라 등의 직접밀수 및 의류, 가짜시계 등 지재권침해물품의 밀수입이 불법무역거래의 주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1월 선박 밀수입 사건 일부(22억원)와 일본산 승용차 및 중고크레인 관세포탈 사건 및 당월 일본산 활꼬막(36억원), 신선어류(11억원) 관세포탈 사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기준으로 204% 크게 증가하였다.

홍콩의 경우 적발건수는 비록 11건에 머물러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하였으나 지난 2006년 1월 홍콩산 위조담배 밀수입 사건(50억원)의 영향으로 인해

금액은 78% 증가하였다.

<표 4-5> 검거대상국가별 불법무역거래사범 검거실적 현황

(백만원)

구 분	2004년 1-12월		2005년 1-12월			2006년 1-2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구성비	건 수	금 액	구성비
중 국	1,792	715,687	1,875 (5)	419,958 (△42)	40.0	261 (18)	97,644 (110)	45
미 국	252	31,511	196 (△22)	174,202 (453)	16.6	21 (11)	2,546 (0)	1
일 본	239	31,036	196 (△18)	21,503 (△31)	2.0	40 (8)	15,152 (204)	7
홍 콩	100	25,246	114 (14)	256,208 (915)	24.4	11 (△21)	7,234 (78)	3
필 리 핀	36	7,392	30 (△17)	1,556 (△79)	0.1	2 (△60)	246 (399)	0
인도네시아	25	6,906	14 (△44)	3,457 (△50)	0.3	5 (400)	1,856 (3,605)	1
독 일	39	20,801	20 (△49)	12,352 (△41)	1.2	4 (33)	1,412 (128)	1
이탈리아	28	3,107	19 (△32)	4,691 (51)	0.4	3 (△25)	483 (231)	0
대 만	37	19,609	22 (△41)	29,082 (48)	2.8	4 (300)	1,339 (35)	1
호 주	12	3,015	20 (67)	643 (△79)	0.1	4 (100)	12 (91)	0
캐 나 다	13	11,720	20 (54)	465 (△96)	0.0	1 -	1 -	0
한 국	141	324,693	147 (4)	91,809 (△72)	8.8	8 (△68)	1,143 (△89)	1
기 타	322	56,105	286	33,116	3.3	39 (8)	60,165 (791)	28
밀수입계	3,036	1,256,828	2,959 (△3)	1,049,042 (△17)	85.8	413 (9)	191,439 (145)	89
밀수출	175	104,081	92 (△47)	173,597 (67)	14.2	15 (△12)	24,133 (640)	11
합 계	3,211	1,360,909	3,051 (△5)	1,222,639 (△11)	100	428 (8)	215,572 (165)	100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자료: 관세청(<http://www.customs.go.kr>)

그 밖에 국가와의 불법무역은 2006년 1월 파나마 국적 선박 밀수입 사건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불법무역 품목을 살펴보면 중국은 여전히 농산물, 의류, 발기부전치료제, 가짜시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본은 수산물, 선박, 골프채 등 다양한 산업품목으로 나타나는 반면 홍콩과 미국은 금년 들어 아직까지는 상표를 도용한 가짜상품 및 소프트웨어 등에 집중되고 있다.

이상에서는 불법무역의 일반적 유형을 관세범죄, 부정무역범죄, 마약범죄를 중심으로 불법무역을 개관하고 이를 검거단서별, 검거기관별, 검거대상국가별 등으로도 일별해보았다. 이러한 관세범죄, 부정무역범죄, 마약범죄 외에 또 하나의 불법무역 유형인 사회안전범죄 동향을 총기 밀반입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안전범죄는 근래 테러위험이 점증함에 따라 주목을 요하는 매우 중요한 범죄이다. 다만 사회안전범죄의 검거 즉 총기 및 실탄류, 고성능 폭발물 등 안전위해물품과 관련한 사건의 검거는 일반 불법무역과 같이 많은 통계량과 사례가 생산되는 경우는 아니나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는 16건 단속에 압수총기류 12정, 2004년에는 단속건수와 압수총기류가 각각 1건, 1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3>.

총기류의 밀반입은 국내·외 범죄조직과 연계된 전문브로커를 통해 외국 상선이나 화물선이 많이 출입하는 부산항 등 항만을 통해 암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반입·유통과정이 은밀하여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청은 총기류 암거래 루트에 대한 첩보수집 및 역추적 수사로 불법유통 무기류 색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내 총기류에 대한 관리 및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 해외 총기 밀반입 관련 사건으로는 필리핀에서 권총 등을 밀반입 한 후 이를 금융기관 상대로 사용한 권총강도 사건 등이 있다(경찰청 보도자료, 2003. 8. 19). 이에 따라 경찰청은 총기 밀반입과 관련하여 항만에 대한 경찰청, 해양수산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4개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한 바 있다.<sup>28)</sup>

28) 경찰청에서는 과주 농협강도사건에 사용된 '필리핀제 38권총'이 부산 감천항을 통해 밀반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총기 밀반입을 근절시키기 위해 총기 밀반입 우려지역인 외국선박 출입 항만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경찰청 보도자료, 2003. 8. 25). ○ 합동단속기간은 2003. 8. 25일 ~ 9. 24일까지로, 무역항이 위치하고 있는 전국 28개항만을 중심으로 해상에 장기 정박중인 내·외국선박 및 선원, 항만주변 수리조선소 등 외국인 선원 출입지역을 중심으로 선박, 선원을 통한 불법총기류 밀반입 행위, 취약시간대 총기밀거래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며, 합동단속을 통해 총기 밀반입·밀거래 행위의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 합동 단속반은, 경찰청(지방경찰청),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관세청(지방세관), 해양

&lt;표 4-6&gt; 밀반입 총기류 단속 현황

(단위 : 건, 명, 정)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단속 (건/명)	6/8	4/18	9/37	2/5	2/2	2/2	2/2	1/1	6/5	1/2
압수 총기류(정)	7	7	12	2	2	2	2	1	12	1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 2005.

또 경찰청은 2005년 APEC(11.12 ~ 11.19)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2005년 5월 불법 사제총기 제조자가 적발되고 외국으로부터의 총기 밀반입이 우려됨에 따라 2005년 7월 한달간 불법총기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44건 52명(구속5)을 검거하고, 엽총·공기총 등 총기류 25정, 공포탄·탄피 등 1,100여발을 압수하였다(경찰청 보도자료, 2005. 8. 5).<sup>29)</sup>

경찰청(해양경찰서) 4개기관에서 인원을 합동으로 편성하여 단속기간내 2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경찰청은 2003년 1월부터 7월말까지 불법총기류사범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총 772건에 980명(구속 34명, 불구속 946명)을 단속하였고, 지난 8.1일부터 9.24일까지 54일간을 부품이용 불법총기류 개조·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보도일 현재까지 101건을 단속, 136명을 검거하여 그중 10명을 구속하고, 126명을 불구속 조치하였다.

- 29) 경찰청은 ○ 미국, 영국에 이어 이라크 파병규모 3위 국가인 한국에 대하여 구체적인 테러관련 첩보는 없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이미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70일간 불법총기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70건 393명을 검거한 바 있고, 이후에도 관련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왔다. ○ 특히 APEC 정상회의를 5개월여 앞둔 2005년 6.13 ~ 6.30일간 관세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항만·공항·국제우편물취급소 등 총기 밀반입 우려 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 ○ 7월 한달간 ① 총기·부품 등의 제조·개조 행위, ② 외국으로부터의 총기 밀반입 행위, ③ 인터넷을 통한 총기류·부품 밀거래 행위, ④ 불법무기류 소지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 기계·공구상가 등 총기·부품 제조·판매 우려 지역과 미군기지 주변·불법체류 외국인 및 고용업체에 대한 자체점검·단속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불법 제조1명, 개조2명, 판매4명, 소지 19명, 기타 26명을 검거하였다.

## 2. 불법무역의 실태: 관세범죄

### 1) 관세법의 의의 및 특징

#### (1) 관세법의 의의

관세법이라 함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을 말한다.<sup>30)</sup>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관세법은 형법상에 규정된 형명의 형벌이 과해지는 범죄를 말하며, 형벌이 과해지는 점에서 일반형사법과 동일하지만 관세행정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관세행정목적 달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세행정벌이 과하여 지는 非行으로서, 행정적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행정법이며 경제법(조세법, 재정법)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自然犯과 法定犯으로 구분한다. 자연범이란 법규범의 설정에 상관없이 행위 그 자체가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설명하고 형사범이라고도 하며 법정범과 구별된다. 반면 법정범이란 행위 그 자체는 반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행정적 목적에 따라 어떤 행위를 명령·금지시키는 구성요건이 설정됨으로써 그 행위의 반사회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행정법이 이에 분류된다.

양자의 구별성은 자연범은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강조되고, 법정범은 행정의 합목적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양자 모두 국가행정목표의 달성을 위한 법적 안정성을 지도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구별에도 불구하고 법정범도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자연범화되는 경향에 있다.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별은 역사적이고 상대적일 뿐 불명확하여 이러한 구별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실정법체계에서는 형법전에 규정된 범죄를 刑事犯이라 하고 행정법규에 규정된 범죄를 行政犯이라고 하는데 현대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국가기능과 행정영역의 확대에 따라 행정범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관세법은 본래 행정법 중의 재정범이므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제정

30) 관세법 제283조 제1항.

된 관세법의 벌칙규정은 재산상의 부당이득박탈을 주목적으로 하여 罰金刑 및 料料刑에만 국한되었으나, 밀수범이 점차 격증하고 그 범죄수법이 교묘·흉악하게 되어 국가재정을 혼란케 하고 국민경제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사회통념 및 도덕적 평가가 변화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벌칙규정에 있어서도 일반 형사범처럼 자유형까지 과할 수 있게 하였으며, 1966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대상범죄에 포함하였다. 이리하여 오늘날의 관세범죄는 행정법적 성격과 형사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혼성적 범죄성격을 띤 범죄로 변화되었다.

## (2) 관세법의 특징

관세법은 단순한 행정법과는 달리 경제범죄로서 영리성·조직성·전문지식성·상습성 등 특징이 있다.

첫째, 관세법은 영리획득(영리성)에 그 목적이 있다. 절도범 등이 빈곤을 타개하기 위하여 범익을 침해하는 이른바 困窮犯인데 반하여 밀수범은 단순한 빈곤타개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경제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범행하는 利慾犯이다. 밀수를 자행하려면 밀수자금이 필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관세법은 일반절도범과 같이 곤궁을 동기로 범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경제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조직성으로 밀수는 예외적으로 해외여행 중에 단독으로 고가품을 은닉하여 밀수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금·운반·보관·판매 등 조직화되고 분업화되어 있다.

셋째, 전문지식성으로 밀수는 외국과 연결된 범죄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지능성을 요구한다. 관세범이 관세를 포탈하고 국가의 금지·제한을 돌파하려면 국내외사정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국제간의 물품이동을 규제하고 있는 법규는 물론이고 그 외에 국제상품에 관하여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관세범은 범죄의 유형중 고도의 지능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는 경제범 중에서도 가장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이 강한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교묘히 합법을 가장하여 거래가격의 조작, 차액의 이면결제 등에 의한 밀수나, 마약·외환·보석·고급전자제품 등 특수한 물품의 밀수에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다

고 하겠다.

넷째, 상승성으로 밀수는 환금성과 수익성에 있어 다른 어떤 일에 종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청산하기가 쉽지 않아 상승화되고 직업화되는 경우가 많다(관세청, 2003. 4).

## 2) 처벌법규의 구조와 관세범의 종류

### (1) 처벌법규의 구조

관세범 처벌법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관세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벌칙(제11장)과 그 처벌절차를 규정한 조사와 처분(제12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벌칙은 다시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법 제278조 내지 제282조)과 각칙에 해당하는 규정(법 제269조 내지 제277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벌칙은 특별한 규정(법 제278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sup>31)</sup> 형

31) 관세법 제278조에서 관세범에 대하여는 형법규정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되 懲役刑에 처할 때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범을 罰金刑에 처할 때에는 형법규정의 일부가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재정법인 관세법 처벌의 目的性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형법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刑事未成年者 처벌 등 7가지이다.

① 刑事未成年者 처벌

형법 제9조에 “14歲 되지 아니한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만14세 미만자는 형사상 責任無能力者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으나, 관세범에 대하여는 만14세 미만자도 징역형이 아닌 罰金刑으로는 처벌한다.

② 心神微弱者에 대한 불감경

형법 제10조제2항에서는 心神障擧로 인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과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微弱한 者의 行爲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범을 벌금형에 처할 때에는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心神喪失者(심신장애로 인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能力이 없는 者)에 대하여는 형법규정대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제1항).

③ 聾啞者에 대한 불감경

형법 제11조는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범은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④ 從犯에 대한 불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從犯의 형은 正犯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범을 벌금형에 처할 때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⑤ 競合犯의 刑量合算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競合犯을 동시에 判結함에 있어서는 “각 罪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罪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罪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범을 벌금형에 처할 때에는 모두 합산하여 처벌한다.

⑥ 刑의 酌量減輕 不認定

형법 제53조에서는 형을 양정함에 있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酌量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범을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에는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조사와 처분은 관세법의 조사방법과 처벌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관세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19조).

## (2) 관세법의 종류

관세법은 관세법상 죄명별로는 금지품수출입죄, 무신고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부정수출입죄, 부정감면·환급죄, 밀수품취득죄, 허위신고죄가 그 대종을 이루고 있다. 아래에서는 금지품수출입죄 내지 부정감면·환급죄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관세청, 2003. 4; 사법연수원, 2005).

### ① 금지품 수출입죄 (법 제269조 제1항)

제269조 (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 의의

금지품 수출입에 따른 밀수출입죄는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출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국가안보, 풍속 및 경제질서를 해치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죄를 중죄로 엄벌하여 국헌의 보호·사회공공질서 및 신용 기타 법익을 그 침해로부터 방위하는데 그 형사정책적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관세법의 영역을 벗어나 사회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자연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법규의 대상이지만 세관업무와

#### ⑦ 法律의 錯誤 不認定

형법 제16조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은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에는 그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 유무를 불문하고 처벌한다

관련하여 일어나기 쉬운 범죄이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취급하고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재정수입의 확보나 관세행정의 질서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사회공공의 안정, 통화의 안정 등을 확보하려는데 있는 바, 본죄는 형사법적 성질의 범죄로서 형법 등에서도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금지품 수출입죄의 객체는 관세법 제2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금지품으로서 다음과 같다. 이러한 물품들은 소위 절대적 수출입금지품목이라 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수출입이 금지되어 설령 “수입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그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다.

-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③ 화폐, 지폐, 은행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sup>32)</sup>

한편 본죄의 행위는 금지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이며 밀수를 하든 수출입신고를 하든 관계없이 본죄를 구성한다. 단, 본죄는 수출입금지품을 수입 또는 수출함으로써 성립하고, 반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반입(보세구역에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이 아닌 소비 또는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sup>33)</sup>

#### 나. 처벌

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품은 범인 또는 제3자가 소유하든 관계없이 몰수한다.<sup>34)</sup>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그 정을 알고 본죄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

32) 관세법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33) 관세법 제2조.

34) 관세법 제282조 제1항.

범에 준하여 처벌되며,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된다.<sup>35)</sup>

양벌규정상의 영업주 본인이나 법인을 처벌할 때에는 본인이나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몰수 또는 추징한다.<sup>36)</sup> 그러나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집단·상습범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sup>37)</sup> 종래 특가법에서는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규정되어 있었으나 물가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3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하였다.<sup>38)</sup> 그 외에 본죄대상 물품의 밀수전용운반기구 및 본죄에 사용된 물품은 몰수된다.<sup>39)</sup>

35) 관세법 제271조.

36) 관세법 제279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본인이라 함은 관세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업무주체인 자연인을 말하여 그 대상으로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등을 포함한다)·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4. 개항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3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67호] 제6조 제1항 및 8항.

3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12.29]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법의 규정 중 뇌물죄, 횡령·배임죄에 의한 국고손실, 관세법위반죄 및 조세포탈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그 동안의 물가변동 등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함으로써 균형있고 적절한 양형을 도모하고자 한 데 있다. 또한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그 중 사안이 무거운 경우를 가려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법위반죄를 포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2005년 12월말에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개정내용>: 제6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1항 제1호 중 “5천만원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을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2억원이상”을 “5억원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제1호 중 “1억원이상”을 “2억원 이상”으로 하며, 동항 제2호 중 “2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한다.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제1항 제1호 중 “5억원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2억원이상 5억원미만”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한다.

39) 관세법 제272조 (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되는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고자 한 때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때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고자 한 때
4. 범죄물품을 운반한 때

제273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①제269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이를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

②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 다. 타죄와의 관계

수출입금지품을 밀수출입하는 경우에 본죄만 성립되고 협의의 밀수출입죄(제269조 제2항 및 제3항)는 성립하지 않는다. 수출입금지품에 대하여는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무신고수출입죄(협의의 밀수출입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형법상 위조유가증권수입죄(제217조)와 음화수입죄(제244조)는 10년 이하와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만일 본죄와 형법상의 동죄가 동시에 성립된다면 특별법인 본죄가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등과의 관계는 사안에 따라 상상적 경합 또는 특별관계가 성립한다. 본죄의 객체는 관세법 제234조 각호에 규정된 물품에 한하므로 마약류관리법, 총포화약류단속법 등에서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마약류 혹은 총기류를 무단으로 수출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세법상 금지품 수출입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② 무신고수출입죄(협의를 밀수출입죄)

## 제269조 (밀수출입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가. 의의

무신고수출입에 따른 밀수입죄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밀수출·반송죄는 수출·반송신고 없이 수출, 반송하거나 실제 수출, 반송되는 물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수출, 반송한 경우에 성립한다.

본죄의 입법취지는 1996년에 수출입통관제도가 수출입면허제에서 수출입신고수리제로 대폭 변화됨에 따라 관세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출입·반송하는 물품에 대한 <성실한 신고>가 요청되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죄를 신설하였다. 즉, <신고유무>를 기준하여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물품에 대한 신고는 정확하게 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감

면·환급을 받거나 부정수출입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처벌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구 관세법 제180조 관세포탈죄로 처벌되던 유세품에 대한 무신고 행위와 제181조로 처벌되던 무세품에 대한 무신고행위가 본죄에 포함되게 되었다.

본죄의 객체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모든 수출입물품이고, 그것이 보통화물·휴대품·이사화물·선용품·우편물 등인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선박이나 항공기도 그 자체를 수출입하였다면 본죄의 객체가 된다. 또한 해당 물품이 유세품이나 무세품이냐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SOFA 특례법상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이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外貨를 밀수입한 경우에는 특별법인 외국환거래법으로 처벌되나<sup>40)</sup>, 外貨로 볼 수 없는 ‘金塊’는 이를 밀수입할 경우 관세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1998년 관세법 개정으로 즉시반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253조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국내에 반출된 물품은 비록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남북한간의 물품 교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역인 수출입과는 다른 반출입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41)</sup> 남북한은 1992년에 상호 물자교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보고 그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sup>42)</sup> 2000년에 체결된 남북 4대 경제합의서 전문에서도 남북간 경제교류가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국내 법상으로도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북한산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관세법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므로<sup>43)</sup> 이러한 물품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40) 대법원1991.3.22.선고 90도1492판결

4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중여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4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5조, 「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1조.

43) 북한산 반입 물품의 관세법 규정 준용과 관련하여,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는 단순히 "물품의 반입"이라 하였으나 2005년 개정된 법에서는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 나. 처벌

수입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수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물품원가’는 원산지 국가의 도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CIF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관세 등 제세 기타 과징금, 비용 및 이윤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sup>44)</sup>

본죄의 교사, 방조범은 정범에 준하여, 예비,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된다.<sup>45)</sup> 물품원가 2억원 이상인 때와 집단·상습범에 대해서는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된다.<sup>46)</sup>

### 다. 타죄와의 관계

물품을 무신고수입한 경우에도 동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에 해당하는 수입금지품인 때에는 금지품수출입죄가 성립할 뿐이다. 본죄는 비록 관세포탈 혹은 부정수입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물품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비해 관세포탈죄 또는 부정수출입죄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상표 등 신고는 제대로 하였으나 거래가격이나 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출입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반입”으로 개정하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39호]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2005.5.31>

44)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193판결

45) 관세법 제271조 (미수범 등) ①그 정을 알고 제269조 및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제268조의2·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2.12.18>

4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

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양자에 차이가 있다. 당해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본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제276조(허위신고죄등)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의 예에 따라 본죄로 성립된다.

무신고수입의 경우는 대부분 대외무역법이 정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양죄로 모두 의율할 수 있고, 이 경우 관세법위반죄와 대외무역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외화의 밀수출입행위에 대하여는 외환거래법상의 처벌규정과 범조경합관계(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특별법인 외환거래법이 적용된다.

## ③ 관세포탈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①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06.3.24>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 1의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갖추어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 가. 의의

본죄는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세액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과세가격,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행위이다. 구관세법 제180조는 관세포탈죄나 신고 없이 수입한 자 및 관세를 탈루한 자 등 궁극적으로 관세를 포탈한 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년 관세법 개정 당시 현재와 같이 밀수행위와 관세포탈행위를 따로 분리하여 규정하였다.

즉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를 포탈한 자는 앞서 살펴본 제269조의 무신고 밀수입죄로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관세를 포탈한 자를 본 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 2006년 개정시 관세법[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887호]에서는 제270조 제1항에 제1호의 2를 신설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케 하도록 규정하였다.

본죄의 주체는 관세를 포탈한 자이다. 대체로 납세의무자가 본죄의 주체가 되겠으나 실제로 범죄행위를 한 자가 주체가 된다. 즉 실제로 수입신고 행위를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수입신고 명의자로 등재된 자만이 관세포탈죄로 처벌 받는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본죄의 객체는 제270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라는 요건에 따라 관세율표상의 유세품인 수입물품이다.

북한산 반입물품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않으므로 수입제한품목의 반입이 가능하고 관세가 없다.<sup>47)</sup> 이러한 무관세 규정을 악용하여 러시아·중국, 동남아 등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바, 이처럼 원산지표시 위반에 의한 위장반입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도 본죄에 해당한다.

관세법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원산지가 법령에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관을 제한하고 있으며<sup>48)</sup> 고의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게 된다.

#### 나. 처벌

본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본죄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고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sup>49)</sup>

포탈한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고 특히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sup>50)</sup>

47)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 2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50조 2항, 3항.

48) 관세법 제230조 (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세관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3.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9) 관세법 제271조.

5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 2005.12.29>

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 타죄와의 관계

본죄는 허위신고죄(법 제276조제1항제4호)에 있어서 가격 등을 허위신고한 경우와 경합여부가 문제되는데 본죄가 목적범임을 감안하면 구성요건을 전혀 달리하므로 경합의 여지는 없다.

---

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부정수출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①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 의의

부정수출입죄는 관세법 270조 제1항 제2호와 제270조 제2항, 제3항에 해당되는 죄이다. 본죄는 법적절차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한다 할지라도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구비할 수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거나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입·반송함으로써 성립된다(제270조제2항, 제3항). 또한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물품을 그 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초부터 수입제한이 없거나 수입이 가능한 부분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와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해체,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범죄(제270조 제1항 제2호)이다.

본죄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의 적정을 기하는 동시에 수출입 통관사무를

관장하는 관세행정 측면에서 대외무역질서의 적정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제27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의 객체는, 완제품은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어 있으나 그 부분품은 수입제한이 없는 등 수입이 가능한 물품이다. 당해 물품의 수입제한 여부는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HS품목분류에 의하여<sup>51)</sup> 불완전·미완성·미조립·분해된 상태의 물품은 그것이 완전품이나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지고 있어 완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한다.

제270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의 객체는 법령이 정하는 허가나 승인이나 추천이나 기타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거나 구비하지 않고 수출입한 물품이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상 수출입금지품이거나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사실상 수출입을 할 수 없는 수출입제한승인품목이거나 수출입자동승인품목일지라도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사실상 통관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본죄의 성립은 당해 품목에 대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수출입 신고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을 구비하였거나 구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물품과 동일성이 없이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는 관세법 제269조의 무신고에 의한 밀수출입죄가 성립되어 처벌된다.

#### 나. 처벌

부정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정수출의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부정수입의 경우 수입제한회피를 위한 부분품 등의 수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종범 및 교사범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고, 예비범과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sup>52)</sup>

51) HS 코드는 모두 10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앞에서 두자리를 류(chapter), 4자리를 호(heading), 6자리를 소호(subheading)라고 한다. 2자리에서 4·6·10자리로 갈수록 대·중·소분류로 세분화된다.

52) 관세법 제271조.

부정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sup>53)</sup> 그러나 부정수출의 경우는 불법의 정도가 낮고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지 않고 있다.

#### 다. 타죄와의 관계

본죄는 수출입신고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수출입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밀수출입죄와는 다르다. 그러나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신고가 없는 것이므로 밀수출입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적인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물품과 실제 수입한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출입죄로 의율하되, 신고의 효력이 물품에 미치나 그 신고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개입한 경우에는 부정수출입죄로 의율하여야 할 것이다. 본죄가 성립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대외무역법위반죄도 성립되고 이 두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이다.

5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

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 부정감면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④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가. 의의

부정감면죄는 관세감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거나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을 침해하는 모든 유형의 위법행위이다.

‘不正한 方法’이라 함은 개정전 관세법에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던 것으로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不正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부정한 방법이면 그것이 詐僞의 방법이든지 세관공무원을 매수하는 방법이든지 그 수단 여하를 묻지 아니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를 불문한다.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라 함은 수입시 조건부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감면조건을 위반하면 ‘관세징수’사유가 발생하고 세관장은 즉시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세관장의 관세징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한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재수출조건으로 면세수입한 유명상표의 바이올린을 국내에서 판매처분하고, 대신 국내의 값싼 바이올린을 구입하여 당해 유명상표만을 부착하여 재수출신고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벌

부정감면죄에 대한 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05년 12월 개정된 특가법에 의해 부정하게 감면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고(개정 전에는 2천만원 이

상), 특히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sup>54)</sup>

중범 및 교사범은 정범에 준하며, 예비범과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sup>55)</sup>

---

5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범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4항.

55) 관세법 제271조.

## ⑥ 부정환급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⑤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부정환급죄는 관세환급을 받을 사유가 없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음으로써 국가재정수입을 침해한 위법행위이다. 부정환급행위의 예로는 수출용원자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대응수출을 하지도 않은 채 품목을 속여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를 환급받는다든가 실제 수출한 물량보다 과장하여 수출신고한 후 그 차액상당을 국내유통시키면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또는 수출품에 사용된 원자재가 저가품임에도 고가품을 사용한 것처럼 수출신고하여 고가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종범 및 교사범과 예비범과 미수범 처벌,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중처벌도 부정감면죄와 같다.

한편 1974년도에 제정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정 1974.12.12 법률 제2675호]은 1996년 개정을 통해 벌칙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즉 1996년 환특법[전문개정 1996.12.30 법률 5197호] 개정시 동법 제23조에 독자적인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처벌형량은 관세법상 부정환급죄와 같이 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법인처벌규정이나 교사·방조·예비·미수범 처벌규정, 형법규정의 배제 등 관세법상 특별규정을 누락함으로써 환특법에 의해 부정환급사범을 처벌할 경우 관세법에 의한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내용에 있어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여기서 부정환급사범에 대하여 관세법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환특법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 3) 관세범죄의 실태분석

#### (1) 관세사범 검거실적

관세사범은 크게 밀수입과 밀수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역시 대중을 이루는 것은 관세회피 등과 관련된 밀수입 사범이다. 밀수입은 다시 관세법 269조에 의한 직접밀수입과 270조에 의한 부정수입, 그리고 통관 이후의 시중단속으로 나누어진다.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밀수입(제269조) 사범에 대한 2005년도 검거실적은 1,492건, 2,019억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건수로는 25% 증가하였고, 금액 기준으로는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검색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환적화물을 가장한 컨테이너 바꿔치기, 보세창고에서 화물 바꿔치기 등 신종수법으로 중국산 농산물, 인삼류, 비아그라류 등에 대한 밀수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정수입(제270조) 사범에 대한 2005년도 검거실적은 637건, 5,420억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건수 기준 21%, 금액 기준 18%가 각각 감소하였다.

부정수입 중에서 관세포탈은 농산물, 기계기구류, 의료광학기기 등에 대한 검거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금액 기준으로 70%가 증가하였다.

또한 부정수입 중에서 관세포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정환급은 전년도 선박용 유류 부정환급에 대한 기획조사와 실크넥타이 부정환급사건(580억원) 등의 영향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

밀수출 사범에 대한 2005년도 검거실적은 25건, 796억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건수는 47% 감소하고, 금액은 195% 증가하였다. 이처럼 밀수출 범죄 금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도난차량의 해외 밀수출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아가리쿠스버섯분말 사건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다.

금년 2006년에 들어서 2월까지 검거실적을 살펴보면 직접밀수입 검거실적은 193건, 5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하여 건수는 16%, 금액은 802% 각각 증가하였다. 직접밀수 검거 금액의 증가 원인은 지난 2006년 1월 외국적 나용선을 가장한 선박 밀수입사건(545억원) 검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lt;표 4-7&gt; 관세사범의 유형별 검거실적 현황

(백만원)

구 분		2004년 1-12월		2005년 1-12월		2006년 1-2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밀	직접 밀수입	금지품밀수	40	33	13 (△68)	1,248 (3,629)	2	3	
		선원·승무원	104	6,470	133 (28)	1,458 (△78)	24 (△25)	333 (1,018)	
		여행자밀수	669	26,788	921 (38)	19,701 (△27)	123 (45)	1,211 (△60)	
		정상화물가장	289	289,235	338 (17)	151,702 (△48)	35 (△10)	3,720 (10)	
		기타밀수입	88	26,807	87 (△1)	27,753 (4)	9 (△18)	54,564 (26,222)	
		소 계	1,190	349,333	1,492 (25)	201,862 (△42)	193 (16)	59,831 (802)	
	수입	부정 수입	관세포탈	696	312,971	585 (△17)	507,431 (70)	109 (28)	38,727 (41)
			부정환급	17	313,775	11 (△35)	24,151 (△92)	1 (△50)	771 (△92)
			수입조건위반	96	19,643	41 (△57)	10,419 (△47)	5 (△17)	713 (△33)
			소 계	809	646,389	637 (△21)	542,001 (△18)	115 (25)	40,211 (6)
	시중단속	141	1,778	125 (△11)	643 (△64)	15 (△25)	297 (149)		
	밀수입 합계	2,140	997,500	2,254 (5)	744,506 (△26)	325 (16)	100,338 (124)		
밀 수 출		47	26,957	25 (△47)	79,571 (195)	3	48		
관세사범 총계		2,187	1,024,457	2,279 (4)	824,077 (△21)	326 (16)	100,386 (124)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자료: 관세청(<http://www.customs.go.kr>)

부정수입사범에 대한 2006년 2월까지 검거실적은 115건, 4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검거건수는 25%, 검거금액은 6% 각각 증가하였다. 이처럼 부정수입 사범 검거금액이 증가한 것은 불법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의 영향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포탈 사건 및 외제승용차 관세포탈 사건(66억원) 적발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관세사범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2005년 관세사범 주종품종은 <표 4-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계기구류(1,912억원), 농산물(1,105억원), 의류 및 직물류(713억원), 금보석류(629억원), 의료광학기기(455억원), 수산물(266억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직접밀수입 주종품목은 금괴(614억원), 기계기구류(137억원), 인삼(115억원), 농산물(51억원), 비아그라(51억원), 견고추(45억원) 등이었다. 특히 국제 금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더불어 환율이 하락됨에 따라 국내외 금 시세차익을 노린 금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sup>56)</sup>

관세포탈 주종품종은 기계기구류(1,774억원), 농산물(975억원), 의류 및 직물류(675억원), 의료광학기기(451억원), 수산물(260억원) 등이며 밀수출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난차량 해외 밀수출 및 아가리쿠스버섯분말 밀수출 등 대형 사건 검거로 전년 대비 금액 195% 증가한 79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56) 금밀수는 인천공항에 집중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2005년 인천공항을 통한 금괴밀수가 2004년보다 85% 증가한 24건에 금액은 425% 증가한 586억원을 적발했다(인천공항세관, 2006.02.06). 이는 관세청 작년 금괴밀수단속 실적 614억원의 95.5%에 해당한다. 밀수된 금괴의 96%인 561억원이 홍콩에서 밀반입되었으며, 밀반입자의 75%인 18건은 한국인이고, 외국인은 25%인 6건이었다. 이와 같이 2005년에 금밀수가 증가한 원인은 국제금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더불어 연평균 환율도 2003년 1,191원, 2004년 1,144원, 2005년 1,024원으로 하락됨에 따라 국내외 금 시세차익이 2003년 1돈당 3,184원이던 것이 2004년 4,383원, 2005년 5,187원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밀수형태도 과거에는 없었던 정상수입화물을 가장한 500억원대 대형 금괴밀수와 금괴를 녹여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금밀수 사례도 6건이나 처음 적발되었다. 예컨대 금괴를 녹여 옷걸이, 장난감 부품, 가방 손잡이 등 신변 생활용품으로 특수 제작하는 수법이 등장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올 2006년도에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국내외 시세차가 줄어들지 않은 한 금밀수가 더욱 교묘하게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금밀수에 차단을 위해 세관뿐만 아니라 경찰, 국정원, 검찰 등 유관기관이 정보공유를 통해 금밀수 특별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lt;표 4-8&gt; 관세사범의 품목별 검거실적 현황

(백만원)

구 분	2004년 1-12월		2005년 1-12월			2006년 1-2월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순위	금액
금·보석류	234,967	23.6	62,867	8.4	4	610
농 산 물	51,205	5.1	110,480	14.8	2	8,175
수 산 물	41,731	4.2	26,614	3.6	6	6,692
축 산 물	2,369	0.2	544	0.1	20	1
한 약 재	6,700	0.7	14,827	2.0	9	869
의료광학기기	25,102	2.5	45,461	6.1	5	197
의류 및 직물	105,804	10.6	71,331	9.6	3	5,008
운동구류·유희용구	5,482	0.5	5,314	0.7	14	464
시 계 류	2,965	0.3	3,144	0.4	17	1,294
가전제품류	12,418	1.2	8,563	1.2	12	2,271
기계기구류	22,661	2.3	191,156	25.7	1	743
주 류	9,618	1.0	1,530	0.2	18	370
식 료 품	12,965	1.3	19,014	2.6	7	4,172
화 장 품	11,481	1.2	4,022	0.5	16	17
건 축 자 재	42,998	4.3	5,788	0.8	13	259
가방·신발류	15,263	1.5	14,820	2.0	10	300
자 동 차	24,733	2.5	14,924	2.0	8	7,093
신 변 잡 화	1,168	0.1	479	0.1	21	87
비아그라류	5,324	0.5	5,176	0.7	15	32
유 류	290,354	29.1	14,719	2.0	11	2
선 박 류	37	0	1,179	0.2	19	54,536
기 타	72,155	7.3	122,554	16.3	-	7,146
밀수입합계	997,500	100	744,506	100		100,338
밀 수 출	26,957		79,571			48
총 계	1,024,457		824,077			100,386

자료: 관세청(<http://www.customs.go.kr>)

## (2) 주요 검거사례

- 2005. 1. 24일 냉동고추를 수입하면서 일명 커텐치기수법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앞쪽에는 정상품을 적입, 안쪽에는 압착 건고추 36톤, 시가 3억원 상당을 은닉, 밀수하려는 것을 관리대상화물 선별로 적발 검거(부산세관)
- 2005. 1. 25일 중국 천진과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내에 금괴 및 비아그라를 은닉, 부식차량 운전기사가 몰래 빼내오는 수법으로 금괴 39kg, 비아그라 14만여정 포함 시가 17억 9천만원을 밀수입한 사건 검거(인천공항세관)
- 2005. 2. 15일 중국으로부터 염장무를 나무상자로 외포장하여 수입하면서 컨테이너의 안쪽 나무상자에는 건고추를 은닉, 밀수입하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건고추 101톤 시가 6억 4천만원 상당 검거(평택세관)
- 2005. 3. 18일 창고주, 통관대행업체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 유령회사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방진복을 수입하면서 녹용 1톤 및 비아그라 등 30여만정을 은닉, 밀반입 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려는 것을 검거(인천세관)
- 2005. 5. 23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04. 10월부터 35회에 걸쳐 중국산 장뇌삼 52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해외 공급책, 국내판매책 등 보따리상 조직밀수 적발(부산세관)
- 2005. 6. 8일 CPU를 항공화물로 수입하면서 박스 속에 금괴 5kg씩을 분산 은닉, 50kg을 밀수입하려는 것을 적발, 이외 2004. 11월 - 2005. 5월까지 동일 수법으로 금괴 3톤을 밀수입, 포함 3,455kg(536억원) 적발 검거(인천공항세관)
- 2005. 6. 17일 소흑산도 서방 공해상에서 중국선박으로부터 비아그라 10만정, 칠점사 등 뱀 1톤 시가 8억원 상당을 분선 밀수입한 사건 검거(광주세관)
- 2005. 7.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5.6kg을 세탁소용 옷걸이 모양으로 변형하여 여행용 가방에 은닉 밀수입하려다 적발, 2003. 9월부터 2005.06월까지 약 82kg, 포함 14억원 상당 밀수입(인천공항세관)
- 2005. 9. 15일, 중국으로부터 특송화물을 이용, 국내 유명놀이공원 자유이용권 6,000매(시가 1억 6천만원)를 서류로 위장 밀수입(인천공항세관)
- 2005. 10. 7일, 중국으로부터 신발을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앞쪽에는 정상품을 적재하고, 안쪽에는 위조 나이키 신발 4,965켤레 외 총 6,724켤레를 은닉 적재하여 시가 14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밀수입한 업체 검거(울산세관)
- 2005. 10. 11일, 328%의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미국산 옥수수를 한국전분당 협회에 가공용으로 수입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1%로 수입통관한 후, 가공하

지 않고 판매, 시가 103억원, 해당관세 66억원을 포탈(인천세관)

- 2005. 11. 3일, 보세창고를 직접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냉동고추와 냉동 마늘을 반입한 후 수입신고 없이 반출하여 판매처분하는 수법으로 2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보세창고업자 검거(인천세관)

- 2005. 11월 홍콩으로부터 CPU등 컴퓨터부품을 수입하여 시중에 판매한 후, 재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하여 실제로는 값어치없는 물품을 선적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관세율 0%인 CPU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액시가 1,721억원을 허위신고한 업체 검거(인천공항세관)

- 2006. 2월 해외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내국세 환급)가 되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러시아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선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신고수리하고도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처분하는 수법으로 12억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밀수입한 수출업체 검거(부산세관)

### (3) 수사사례분석

#### ① 경찰청

【부적합 판정 받은 수입 생녹용·사향을 시중유통시키고, 위장수출후 통관세 환급받은 수입업자 등 7명 검거, 경찰청 보도자료 2003. 6. 20】

#### ● 개요

경찰청 (외사3과)에서는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뉴질랜드·러시아산 생녹용 4만Kg, 사향 8Kg (23억 상당)을 수입 후, 식약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하는데, 임의 가공하여 시중 한의원 등에 불법판매하고, 반송 한다며 홍콩으로 위장수출하여 2억원 상당의 통관세를 환급받은 녹용수입업자 등 7명을 검거하고, 2명을 수배하였다.

## ● 내 용

경찰에 따르면 1) 피의자 정○○은 경가 군포 당정동에 (주)○○생약주식회사라는 녹용 등 한약재를 수출입 제조 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여회에 걸쳐 뉴질랜드산 생녹용 25,900Kg(시가 15억6천만원), 러시아산 사향 8Kg(1억7천800만원)을 수입 부적합판정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봉합해놓은 것을 함부로 개봉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약사법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수입한 뉴질랜드산 생녹용과 러시아산 사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부적합판정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반송 폐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향 8Kg를 경기 평택시 소재 ○○제약에 3억2천500만원을 받고 재시험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판매하고, 위 부적합 판정받은 생녹용 25,900Kg 중 1,100Kg를 2002년 5월 초경 홍콩 수입업자에게 3260만원 상당에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허가를 받아 위장수출 후 홍콩에서 보관하다가, 생녹용의 하대부분을 잘라내고 재수입하여 시중 한의원 등에 판매하고, 나머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녹용 24,800Kg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홍콩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수출하여 보관하다가 손질을 하여 재수입 판매할 목적으로 쿠키 드라이등 제조하여 ○○생약 창고에 저장한자이고,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제조공장은 관리약사 내지 한약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제조관리 약사 없이 한약재를 제조한 자임.

2) 남○○는 경동 한약상가에 (주)○○제약이라는 사무실과 경기 연천에 한약재 제조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한약재 수입 제조 판매업자로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약 15,000Kg(약 8억2천300만원상당)을 수입한 후 식약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같은 해 4월부터 7월까지 식약청 공무원이 봉인 봉합해놓은 상태로 수출국으로 반송 폐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송한다는 명목으로 함부로 개봉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쿠키 드라이 절단하는 등 제조한 후, 홍콩으로 3회에 걸쳐 위장수출하여 통관세 2억원 상당을 환급받아 판매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한약재 제조공장에는 관리약사를 상주 관리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약사 조○○에게 월 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약사증을 대여 받아 게시해 놓고 관리약사 없이 뉴질

랜드산 생녹용 1만 Kg를 제조 가공한 자임.

3) 조○○은 (주)○○무역 대표로 위 정○○의 생녹용 수입시 수입대행자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반송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아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2년 10월 27일 ○○건재약업사(대표 최○○)를 통해 러시아산 녹용(원용) 671Kg (3억5000만원)를 수입 후 식약청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기 전에는 시중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공무원이 봉인 봉합 해놓은 것을 함부로 개봉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충남 천안소재 ○○한의원에 5Kg를 판매하는 등 400Kg(2억원 상당)를 판매한 자이고, 관리약사 없이 한약재를 제조한 자이다.

4) 조○○은 1967년 3월 20일자 면허 제271호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약사면허를 취득한자로 약사면허를 (주)○○제약 남○○에게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 월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400만원을 받고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자이고,

5) 백○○은 약사면허 제 40067호로 200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월50만원을 받기로 하여 950만원을 교부받고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자이고,

6) 김○○은 약사면허 제50428호로 200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월35만원을 받기로 하여 840만원을 교부받고 약사면허증을 대여한자이다.

7) (주)○○생약(대표 정○○) 8) (주)○○무역(대표 조○○) 9) (주)○○제약(대표 남○○)는 법인으로 양벌규정에 의해 대표자 처벌.

#### ● 적용법조 및 향후 조치사항

경찰에서는 약사법 제56조 제3호 (부적합 판정받은 의약품의 제조등의 금지) 및 제75조 제1항 제1호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9조 제1항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및 제76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제5조 제3항 (약사 면허 대여금지) 및 제74조 제1항 제1호 (5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와 제78조 (양벌규정)<sup>57)</sup>,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5년 이하 징역)을 적용하는 한편 녹용 등 한약재 수입업자들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한약재로써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저질 한약재 등을 수입 한 후,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시중에 불법판매하고, 식약청 등 단속기관에서 반송 폐기 지시

57) 약사법 제78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74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상당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를 하여도, 반송한다면서 대체 보관하여 단속을 피하거나 위장수출 형식으로 통관세를 환급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산 녹용 등 한약재 밀수사범 적발, 경찰청 보도자료 2004. 2. 9】

● 개 요

경찰청은 2004년 2월 4일 오후 6시경 경기 구리시 소재 중부고속도로 진입로 상에서 발생한 밀수의심 차량 컨테이너 화재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인천 및 서울 세관과 공조 합동수사하여 동 컨테이너의 엑스레이 투시 및 해체작업으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중국산 녹용, 홍삼, 백삼 등 총 42박스 시가 약 2억원 상당(도매가 약 1억원) 도합 1천373kg의 수산물로 가장한 밀수품을 컨테이너에 몰래 숨겨 들여온 수산물 수입업자 등 관련업자 2명의 신병을 확보하여 주범 정○○(42세) 등 2명의 밀수업자에 대해 수배하는 한편 신병 및 증거물 등 사건일체를 서울세관에 인계하였다.

● 내 용

경찰에 따르면 관련자 송○○ 이○○은 수산물 수입업자, 정○○ 성○○은 무역업에 각 종사하는 자들로 상호 거래관계에 있는 자들 인 바 세관에서 식용으로 사용될 생물에 대해서는 방사선 노출의 우려 때문에 수산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투시기를 이용한 정밀검색을 하지 않아 수산물로 위장한 컨테이너로 밀수를 하면 통관하기가 수월하다는 점을 알고 각종 밀수품을 밀수할 목적으로 수산물 수입 컨테이너의 바닥과 벽의 구조를 2중으로 개조 변경하여 밀수품을 숨겨올 비밀장소를 만든 후 바닥과 벽면속에 1kg당 시가90만원 상당의 녹용 155kg와 1kg당 10만원 상당의 홍삼 70kg 그리고 1kg당 시가 5만원인 백삼 1천148kg(미삼 37kg포함)등 총 42박스 약 1천373kg(시가 총 2억원상당)에 달하는 중국산 한약재를 동 컨테이너에 숨긴 채 산소용접하여 외관상으로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컨테이너로 위장하여 세관의 통관을 거쳐 보세창고에서 형식상 수입한 수산물의 하역을 마친 후 컨테이너의 수리를 한다며 경기 북부의 외곽지역으로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완전해체하여 그안에 숨겨온

위 밀수품을 빼돌리려 했던 것 임. 경찰청 외사3과에서는 인천세관의 협조로 용의차량인 경기 ○○바2○○○○호(4.5톤 화물차)에 탑재한 위 컨테이너를 엑스레이 투시기로 검색한 바 2중 구조로 분리되어 있는 내부에서 의심물질이 확인되어 컨테이너를 서울세관으로 옮겨 바닥과 앞쪽 벽면 부위 등 전체를 해체하는 작업을 벌여 위와 같은 밀수품을 적발 위 사고발생 당시 용의차량에 선탑자로 탑승했던 수산물수입업자 송○○과 그 뒤에서 1톤 화물차 트럭을 운전하여 망을 보며 동행하던 같은 수입업자 이○○의 신병을 확보하여 서울세관에 신병 인계하고 아울러 달아난 주범 정○○ 및 명불상 성○○에 대해 수배를 한 것이다.

## ② 관세청

【도난밀수출 차량, 외국세관과 수사공조로 반환진행 - 필리핀 세관에 압류된 도난차량 10여대 등, 관세청 보도자료 2006. 4. 25】

### ● 개 요

관세청은 도난당한 중고 자동차 10여대가 필리핀으로 운송중인 것으로 확인돼 이들 물품에 대해 필리핀 관세청과 협의해 환수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지난 2006년 4월 24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부산세관이 중고자동차를 훔쳐 필리핀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조사 중 밝혀진 것으로 각국 관세청과의 공조로 밀수출한 도난차량은 회수한다는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 ● 내 용

관세청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4월 3일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수출 신고하고 렉스턴 자동차 2대 등 모두 4대를 밀수출하려다 이 같은 정보를 사전 입수한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은 또 2006년 4월 7일 충북 괴산경찰서도 같은 물품을 도난혐의로 추적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과 공조수사 하던 중 압수한 물품이외에 도난차량 10여대가 추가로 더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 부산세관은 이들 차량을 추적하기 위하여 수출화물을 추적하던 중 동 물

품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된 컨테이너 5대가 대만 카오슝항에서 2006년 4월 13일 필리핀 세부항에 도착예정으로 운송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즉각 필리핀 관세청에 도난차량이 필리핀 세부항에 도착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 차량이 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긴급히 수사협조를 요청해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아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과 협조하여 반환 추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 향후 조치사항

대부분의 차량 밀수출은 정상 수출품인 가구, 기계부품, 생활용품 등이나, 차대번호를 변조하여 정상적인 차량으로 위장하여 밀수출 하는 등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를 악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도난차량 등 물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환수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이러한 유사 범죄에 대하여 국가간 협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는 수출입품에 대하여 세계 각국이 국가간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고 WTO, WCO 등 국제기구에서도 국가간 무역촉진 등을 위하여 이를 강력히 권고하는 있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수출통관절차에 대하여는 인위적인 국가간 통제를 제한하고 문화재, 전략물자, 마약, 대테러물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WTO, WCO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 통관절차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면서도 전략물자, 마약, 대테러물품, 가짜상품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제수사공조를 실시하는 등 관세행정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하여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취할 것이다.

### ③ 수사사례의 함의

부적합 판정 받은 수입 물품을 시중유통 시키고 관세를 부정환급 받은 밀수입 사건뿐만 아니라 한약재 밀수사범 적발 사건 및 도난차량 불법수출 사건에서 보듯 불법무역 차단을 위한 국내외적 공조수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난차량 불법수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 도난차량 전산망(2002.5월)과 건교부 차량등록 전산망(2002.9월)을 관세청 수출신고(차대번호) 전산망과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 운용되고 있는 바, 중고차량 주요 수출국<sup>58)</sup>, 우범 수출업체, 전과자 등을 DB화하여 이들 자료를 활용한 우범 업체, 물품 등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감시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세청에서는 이동식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도입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된 자동차 등 밀수출물품에 대하여 선적전 검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국내외 관계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고수출업자, 선박회사, 운송업자 등 관련 종사자에까지 정보입수 범위를 확대하고 잠금장치 확인 등 차량도난 및 밀수출방지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형사판례분석

①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법의 실효 및 특가법 적용 배제 여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4550 판결)**

##### 【사실관계】

피고인은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입고추 5,700kg과 함께 관세환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내산 고추 6,000kg을 혼합하여 제조한 고추편 10,000kg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음에도 그 전량을 수입고추로 제조하여 수출한 것처럼 관세환급 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38,101,580원을 환급받았다.

##### 【판결요지】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고

58) 중고자동차 수출현황을 보면 2005년 기준을 연간 약 4만건(전체수출신고의 0.8%), 19만여대가 수출되고 있으며, 주요수출국은 요르단(39%), 수단(7.5%), 러시아(6.4%), 베트남(5.4%), 몽골(4.4%), 키르기스(3.4%), 가나(2.9%), 필리핀(2.8%), 캄보디아(2.8%), 타지크(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2005년 자동차대수기준).

한다) 제23조 제1항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5항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4항은 관세법 제270조 ...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의 경우 그 부정환급 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급특례법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경우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납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이하 '관세 등'이라고 한다)의 환급을 위한 근거와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환급특례법 제23조에 위와 같은 수출용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관세법 제270조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환급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대법원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관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이 수출용원자재에 관한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가법 제6조 제4항,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의 관세부정환급에 관한 죄로 의율한 원심 판결을 긍정하였다.

부정환급사범에 대하여 관세법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환특법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으나 대법원 판례는 부정환급 사건의 경우, 관세법 및 특가법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V. 경찰의 제도적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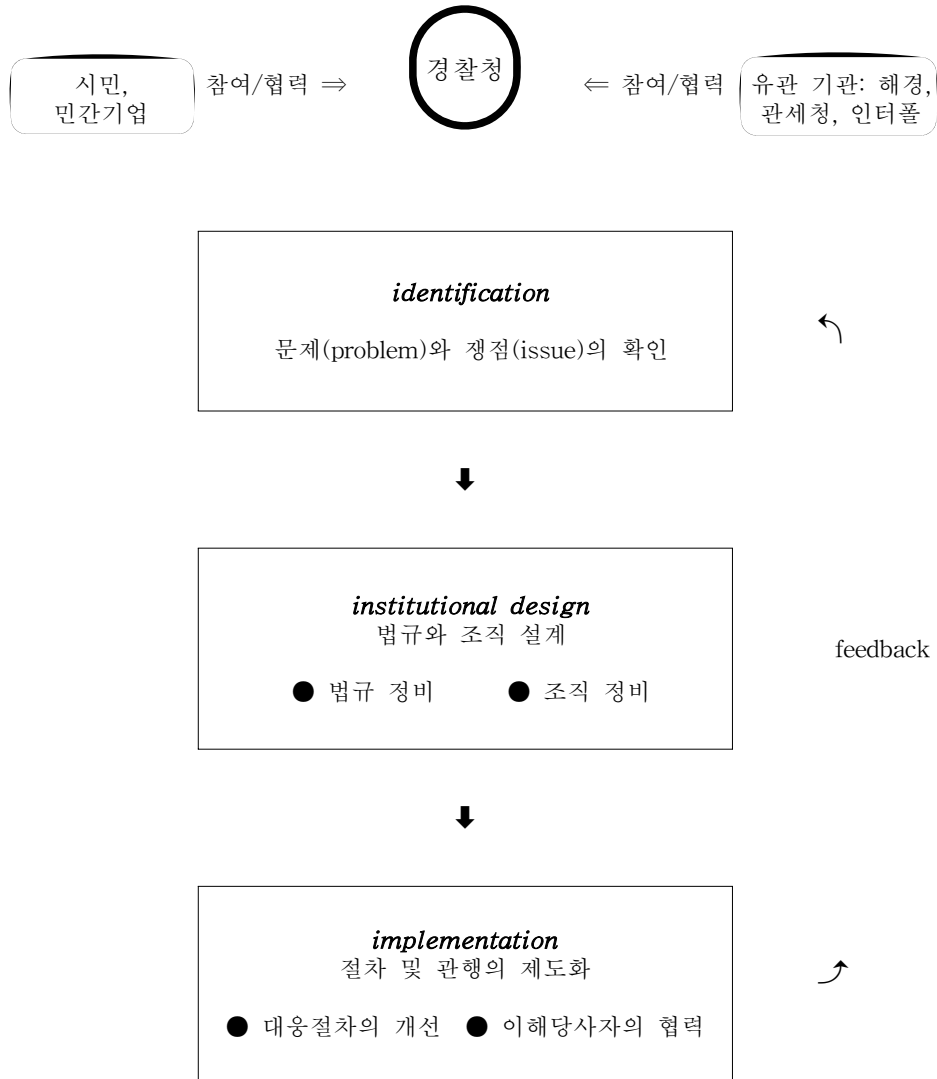
### 1. 불법무역 대응체계 제도화의 기본구상

#### 1)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모델

본 연구는 서론에서 제도를 법, 규칙과 같은 공식적 제약(formal constraints) 및 비공식적 제약(informal constraints)을 포괄하여 정의하는 견해를 취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념에 기초할 때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란 “범죄대응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식적인 법규와 조직, 구조화된 절차 및 관행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의에 따라 <그림 5-1>과 같은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모델을 구축해 볼 수 있다.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과정은 불법무역범죄 등 문제 발생과 쟁점의 확인(identification), 법규와 조직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 설계(institutional design), 범죄대응을 위한 절차 및 관행을 제도화하는 집행(implementation), 그리고 환류(feedback)에 의한 순환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범죄대응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주체는 우리 경찰청 및 유관기관, 민간기업, 시민 등으로 볼 수 있다. 범죄대응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어서는 경찰청이 중심적인 행위자가 되며, 범죄대응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이중에서 특히 심각한 쟁점으로 발전하는 것들은 공식적 법규 정비와 조직 개편, 범죄대응절차 개선 등을 통해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역시 범죄대응의 주요 행위자이며 이해당사자인 바, 이들 유관기관도 범죄대응 제도화 노력에 참여하고 협력한다. 민간기업과 시민은 불법무역 범죄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바, 범죄예방 및 법제도상 문제점의 제기 등을 통해 범죄대응 제도화에 적극적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림 5-1>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모델



## 2) 범죄대응 거버넌스

위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모델에서는 경찰청과 유관기관, 민간기업·시민 중 경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세 행위자 모두 범죄대응에서 현실적 이해당사자이며 특히 해경,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시민의 참여·협조는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에 가장 핵심적 성패 요인이다.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조가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를 가능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입장은 범죄대응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거버넌스는 국가와 사회관계를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형태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양자를 수평적인 파트너관계 또는 네트워크관계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상호의존성, 공통의 목적, 자원의 교환, 행위 주체들 간의 신뢰, 게임의 규칙,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간 자발적 네트워크” (Rhodes, 1997: 15) 혹은 “특정의 공유된 정책 목표가 있을 때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응집적이고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결정에 이르는 방식” (김석준 외, 2002: 7) 등으로 정의된다. 요컨대 거버넌스의 핵심을 구성하는 내용은 협력(collaboration), 동반자관계(partnership), 네트워크(network)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범죄대책 등 공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범죄대응 거버넌스는 종래와 같이 국가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민간조직과 중간 매개적 조직들 간의 연결망에 의거한 협의적 결정과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대응 거버넌스는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적 및 사적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수용되면서 상호협력적 행동이 취해지는 과정이다. 이러한 범죄대응 거버넌스는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 사회경제관계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여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효율적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2. 불법무역 대응체계의 주요 정비 방향

FTA에 의한 자유무역의 대세와 교역증대에 따라 탈법무역의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원활화를 지원하고 동시에 탈법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바람직한 대응체계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탈법무역 차단 혹은 사회안전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장비 개선, 정보화, 인력의 전문화, 국제적 협력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sup>59)</sup> 본 연구에서는 범죄 대응체계의 제도화 모델에 따라 법규 및 조직 정비, 대응절차의 개선, 이해당사자의 협력 등으로 대응체계의 방향을 분설하고자 한다.

### 1) 법규 정비

국경절차에서 무역원활화는 목표가 명확하며 비교적 수월하게 측정될 수 있다. 반면에 탈법위험 최소화는 당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법익이 명확히 규정될 때 그 목표도 분명해 질 수 있다. 따라서 관세수입 확보, 산업경제 보호, 소비자 보호, 국민의 건강, 환경보호, 국가사회의 안전보장 등으로 표현되는 법률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통일적으로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무역원활화에서 중시되는 국경절차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와도 밀접한 관련(Arrowsmith, 2003: 283-303)이 있다. 이러한 기준은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교역관련 법규 중 예컨대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현행 법규체계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제도발전과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표시위반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sup>60)</sup> 즉, 양 법규에 원산지표시제도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각기 제시되어 있어 순수 정책규정과 집행규정에 대한 구분이 없는 상태로 혼합하여 규정되어 있다.

대외무역법에는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원산지표시의 손상이나 변경 등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관세법에서는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등은 모두 조사의뢰하고, 경미하거나 부적정한 표시의 경우는 보완이나 정정 등의 시정조치를 한 후 통관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처벌기준 불합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수준으

59) 예컨대 오웅탁·김진섭은 무역원활화와 사회안전의 조화 방안으로 ① 검색장비의 첨단과학화 ② 통관시스템의 정보화와 공동활용 ③ 세관인력의 전문화와 세관서비스의 현대화 ④ 국제협업화 증진을 제시하고 있다(오웅탁·김진섭, 2003)

60) 특히 남북교역 관련된 원산지규정의 경우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외에 현재 각 부처별 고시가 난립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당해 부서의 실무자가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원산지규정을 준수해야 할 기업들 역시 탈법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로 처벌되는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원산지표시의 손상이나 변경 등에 대해 각 위반행위,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처벌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및 산업피해구제법 등에 혼재되어 있는 순수 정책규정과 집행규정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대외무역법에는 순수 정책규정인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등을 규정하고, 관세법에는 집행규정인 원산지표시방법과 조사권 등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강홍중·성윤갑, 2005).

관세환급과 관련한 대외무역 법규 중에서는 부정환급범죄에 대한 법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환특법이 균형있는 산업발전과 효율적인 수출지원을 겨냥한 법제라 하더라도<sup>61)</sup> 동법은 법인처벌규정이나 교사·방조·예비·미수범 처벌규정, 형법규정의 배제 등 관세법상 특별규정을 누락하고 있어 부정환급사범에 대하여 관세법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환특법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모호하게 되는 문제점을 갖는 것이다. 비록 현 대법원 판례에 의해 부정환급 사건의 경우, 관세법 및 특가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환특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율상 명확성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세와 지재권, 원산지 관련 법규 정비와 함께 특히 경찰청 차원에서는 마약범죄, 테러용 물품 밀수입, 전략물자 밀수출 등을 포괄한 국제적 수준의 불법무역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색수배서(Red Notice)<sup>62)</sup>의 효력 확보와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인터폴의 체제 하에서 적색수배서의 효력을 위한 국내 관련법 개정과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적색수배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적색수배서가 국내법상 외국이 요청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되거나 또는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긴급인도구속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적색수배서가 국내법상 긴급인도구속 요청서로 간주되어 긴급체포 또는 강제추방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형사

6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 2004.3.22 법률 721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입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입시수입부가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과 국제기본법 및 국제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2) 적색수배서(Red Notice: Form 1)는 청색수배서(Blue Notice: Form 2), 녹색수배서(Yellow Notice: Form 3),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Form 4), 흑색수배서(Black Notice: Form 5) 등과 함께 인터폴이 발행하는 개별수배서(Individual Notices)의 하나로서 범죄인인도를 위하여 체포가 요망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발행된다. 양식 오른쪽에 적색 4각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 '적색수배서'라고 불리며, 국제체포수배서(International Wanted Notice)라고도 한다(박기륜, 2004: 350-351).

소송법 제200조의 3에 규정된 긴급체포 사유 또는 제211조 준현행범인의 유형에 적색수배자도 포함시키고, ② 범죄인인도법 제24조와 제26조를 개정하여 적색수배자가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일치한다는 조건하에 범죄인인도요청서, 즉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명령하도록 하고, ③ 출입국관리법 제46조와 제11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 및 입국금지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적색수배자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발견된 경우에 즉시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의 당사국인 경우에 범죄인인도가 즉시 개시될 수 있으며,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수배서 발행 요청국으로 추방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를 위한 법규 정비 측면에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유럽폴(Europol)과 Schengen 경찰협력, 남아프리카의 11개 국가간에 행해지고 있는 SARPCCO(Southern African Regional Police chiefs Cooperation Organization)에 의한 국제경찰협력 등 국제적으로 국제경찰협력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법적인 측면에서 국제경찰협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문규석, 2003).

## 2) 조직 정비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절차 관련 법률의 입법과 집행 및 관리 시스템은 분산형·독립형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에 따라 탈법위험에 대한 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역원활화의 추진에도 여러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정재완, 2005). 국경절차 관리를 통합적인 기관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된 기관에서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분산시스템으로 행할 것인가는 나라마다 그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대체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통합적 기관에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독립된 기관에서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대륙법계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으며 국경절차 관리 시스템이 분산형·독립형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은 특히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경절차에 관여하는 정부기관과 그 산하단체는 약 60여개 이상이며, 관세법에 의해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과 직접 관련되는 기관만도 28개 기관이다.<sup>63)</sup> 이들 기관간의 협조는 부분적으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통관 단일창구(Single Window)구축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기관간 연계시스템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만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경절차 이행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경절차와 같이 출입하는 물품 또는 사람을 중심으로 업무가 수행될 때 정보의 통합·공유가 절차 이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이후 미국이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설치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sup>64)</sup>

이러한 미국의 국경절차 관련조직의 개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중장기적으로 불 때 무역원활화와 탈법위험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경절차의 중심이 되는 물품과 인원의 핵심적 통제조직은 통합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국경절차와 관련되는 모든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또 권한 집중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 따라서 국경절차가 필요한 국제화물에 대해서는 법령상 현재와 같이 55개 법률 관장기관에서 각기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독자성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되 적어도 탈법위험이 높은 구체적인 대상품목과 요건규정의 고시, 요건 및 현품의 확인, 그리고 범칙 단속기능을 경찰청을 비롯 해경, 관세청에 집중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여타 다른 기관에서 이와 같은 고시, 확인, 단속이 행해진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공조로서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역원활화를 확보하는 동시에 탈법위험을 차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교역관련 범죄를 포괄한 국제성 범죄의 다양화, 지능화, 복잡화 대비하여 전문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구 확대와 해외 경찰주재관의 증가, 전문수사요원의 양성 등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국제성 범죄 증가와 재외국민 보호 필요성 등 외사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2006년도 3월 30일 ‘외사

63) 관세법 제226조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1항 및 2항.

64) 미국 국토안보부 조직을 보면 ① 국경과 교통수송체계의 안전유지 ② 테러 공격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비상대비와 대응 ③ 대량 살상무기를 포함한 테러 위험에 대비, 대응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④ 미국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정보와 첩보를 수집 평가하여 적시에 경고하고 예방조치를 하는 정보분석 및 기반시설의 보호 등의 업무가 망라되어 있다. 관세청, 이민귀화국, 동식물검역소, 국경순찰대, 연방시설보호청, 수송안전청 등 22개 국경절차 관련기관이 통합된 것이다(관세청, 2004. 10: 5-17).

관리관'을 '외사국'으로 확대 개편하였는 바, 이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향후 인력증원 및 수사요원의 양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경찰주재관은 세계 11개국 18개 지역에 20명이 파견되어<sup>65)</sup> 재외국민이 당하는 사건·사고 처리와 관련한 영사업무는 물론 주재국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국제수사공조, 해외 도피사범 국내송환, 각종 국제범죄 정보의 수집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이번 경찰주재관 증원을 계기로<sup>66)</sup> 경찰청은 국제성 범죄에 대응한 우리 경찰의 국제적 활동영역을 확대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경찰공조와 국제성 범죄 수사 능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화 및 실무교육, 외국어교육, 해외연수와 훈련 등 외사전문요원의 양성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67)</sup>

### 3) 대응절차의 개선

국경절차에서 위험관리의 핵심은 그 절차 이행과정에서 소수에 해당하지만 탈법위험도가 높은 개인 또는 업체를 선별하여 이를 특별히 관리하는 데 있다. 현재 국경절차에서 위험관리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세관의 경우를 보면 개인(여행자) 또는 업체(무역업체, 보세구역설영업체, 보세운송업체 등)의 법규준수도를 평가하여, 준수도가 높으면 탈법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편의적 절차 이행을 허용하고, 반대로 준수도가 낮으면 탈법위험도는 높은 것으로 보아 엄격한 절차관리를 행하고 있다.

국경절차에서 무역원활화와 함께 탈법위험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탈법행위의 적발과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적실성

65) 2005년 현재 미국 3(워싱턴·뉴욕·LA), 중국 6(북경 2·심양 2·청도·홍콩), 일본 2(동경·오사카), 러시아 2(모스크바·블라디보스톡), 프랑스 1, 남미 3(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동남아 3(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명이다.

66) 경찰청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당하는 사건·사고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경찰의 재외국민 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에 경찰주재관 30명을 증원하기로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2005년 9월 당시 협의 완료된 증원대상 공관은 영국·독일·베트남·시카고·시드니·인도·나고야·스페인·중국·청두·태국·뉴질랜드·요코하마·호치민·광저우·몽골·밴쿠버·일본·선양·캄보디아·뭄바이·상하이·우즈벡·과테말라·토론토·그리스·필리핀·상트 페테르부르크·남아공·케냐 등 총 30명이다(경찰청 브리핑, 2005. 9. 10).

67) 일본의 경우 경찰청에 국제수사연구소를 두고 국제수사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국제범죄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외국경찰모델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국제범죄수사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제수사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는 외국어는 물론, 국제수사공조, 외국의 형사법 절차, 외국의 수사실무, 외국인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조규철, 2002: 126).

(relevance), 정확성(accuracy), 적시성(timeliness)을 갖추어 생산해 낼 수 있는 범죄정보시스템의 구축이다. 특히 테러용 물품이나 마약 등 사회안전과 관련되는 물품의 차단에 있어 그러하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에서는 수집된 수사자료와 범죄정보를 적극 공유·활용하고, 범죄분석팀(VICAT, Violent Crime Analysis Team)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지능화·다양화·광역화되어 가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은 21세기 세계화·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대비, 컴스텟과 경찰범죄통계(202통계)를 통합하고 범죄지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과학적인 현장수사 지원체제 강화와 사무자동화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구축하여 2004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국경절차에서 탈법위험은 의도적인 불법행위이나, 법령 절차에 대한 무지 또는 단순착오에 의해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치 있는 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국경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전략적 성격), 탈법행위의 적발과 단속에 필요한 정보(전술적 성격), 그리고 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방어적 성격)가 망라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요구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종합적인 범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종합적 범죄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은 광범위한 정보관리체계 운용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측면이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예를 보더라도 그 구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고 다음으로 시스템 설계과정에서 접근권한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형사사법 서비스는 형사소추, 재판과정 등 직접적인 국민 참여가 많지 않은 영역이므로 원래의 정보를 인권침해가 없도록 잘 가공하여 공개함으로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국정브리핑, 2005. 10. 26).

또한 국제적 수준의 경찰 정보협력, 즉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의 내용

중에서도 인권보호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 인터폴 사무총국은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경찰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각국의 국가중앙사무국(NCB: National Central Bureau), 비회원국의 법집행기관,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정부간 기구, 법인 및 일반 사인으로부터 경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찰정보는 일정한 유형의 데이터로 분류되고 일정한 기간 컴퓨터에 저장되어 적절히 업데이트가 되며, 필요한 경찰정보를 요청하는 회원국의 NCB, NCB의 동의하에 형사법집행 또는 경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국가의 다른 법집행기관 및 기타 기관에게 그 정보가 제공된다. 따라서 인터폴 사무총국은 보통범죄의 진압에 있어서 국제센터로서의 역할 및 NCB 등 법집행기관이 제공한 경찰정보의 유일한 저장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터폴의 데이터보호 제도이다.

인터폴의 데이터보호 목적은 인터폴 헌장 제2조에 규정된 인터폴의 목적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연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어떠한 위협을 피하여 국제경찰협력 체제 내에서 처리되어 전송된 경찰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경찰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관리함으로써 인하여 인터폴의 업무를 신속히 이행함과 동시에 경찰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소망스럽지 못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유럽폴의 범죄정보시스템 및 센겐경찰협력의 센겐 정보시스템도 데이터보호와 관련하여 기기 접근 통제, 자료매체 통제, 자료 접근 통제, 이용의 통제, 사용자 통제, 전송의 통제, 자료입력의 통제, 자료전달의 통제 등 데이터보호에 관련된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를 감시·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도 데이터보호 및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문규석, 2003: 495-496).

이러한 국내적, 국제적 정보관리체제 구축 사례와 인권보호 측면의 시사점을 볼 때, 우리 경찰이 종합적인 범죄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가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위험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현재 경찰이 운용하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서부터 그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관의 부당한 개입뿐만 아니라 수사관에 의한 자의적 남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사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현재 경찰청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은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로 운용될 수 있다. 범죄정보관

리시스템은 사건의 접수, 배당, 관련인의 조사, 강제수사의 여부, 수사관의 검토 의견, 송치결과 등이 공개되어 민원인들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과정상의 결과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찰내부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112 신고 등으로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여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정식 입건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경찰서 민원실에 기록이 되고 현재 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도 기록이 되어 팀장이 사건배당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수사개시 이전의 단계인 내사의 경우 외부의 부당한 청탁이나,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시 될 수 있다(박노섭, 2006: 65-66). 또 내사사건은 암장될 경우 경찰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협하고, 내사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손동권, 2006: 28). 따라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CIMS에 내사의 개시 여부와 그 근거를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 보호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CIMS를 기반으로 발전시킬 종합적 범죄정보시스템은 경찰 독자의 단일 통합적 시스템보다는 유관기관과의 연계적 협조시스템을 지향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력(collaboration), 동반자관계(partnership), 네트워크(network)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범죄대응 거버넌스, 범죄대응체계 기본구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통합시스템 추구하고 정보 남용에서 오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4) 이해당사자간 협력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를 지향하며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해당사자간 강력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의 형성에 의한 상호 협력(collaboration)이다. 파트너쉽은 우리나라의 국경절차 관리 국가기관과 다른 나라의 유사기관간, 국내 국경절차 관리기관과 기관 간, 그리고 국경절차 관리기관과 절차이행자((민간기업, 시민)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형성될 필요가 있다.

국경절차 이행은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 하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경절차 관리 기관간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는 각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의 마련과 운영, 현지 주재관 파견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와 기업활동은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원자재 및 재원조달, 상품생산, 마케팅, 사후관리(A/S), 연구개발(R&D) 등이 전세계적 규모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국경절차 및 범죄와 관련된 많은 업무도 세계 각지의 현지에서 확인되어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내의 국경절차 관리기관과 기관간의 파트너십 역시 기관간의 공조체제 구축에 의해 강화되어야 한다. 경찰청은 해경, 관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국제범죄 단속, 범죄정보시스템 연계운용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확대하여 상호정보제공 및 협력을 제도화시켜나아가야 할 것이다.<sup>68)</sup>

이러한 국내외 협력 과제와 관련 현재 경찰에서는 국경절차와 관련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폴 실무자회의 참석 및 해외주재관을 통한 국제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하고, 법무부·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적발사례를 통해 나타난 취약요인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유사범죄 전과자를 중심으로 우범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경찰청, 2005). 지난 2006년 4월 도난차량 불법수출 사건 검거와 국제적 환수절차 사례에서 보듯 불법무역 차단을 위해 향후 국내외적 공조수사를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경절차 관리기관과 무역관련 업계 및 시민과의 협조는 무역원활화와 효과적인 탈법위험 차단을 위해서 아직 발전시켜야 할 여지가 많다. 국경절차 관리기관과 파트너십 형성의 대상이 되는 주요한 민간주체는 국경절차 이행대상인 물품의 생산, 운송, 하역, 보관, 유통 등 여러 단계의 민간기업이다. 이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의 협력 정도가 높을수록 관리기관이 보다 편

68)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해상범죄 단속에 성역 없는 정보제공과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 체결(2004. 6. 30) 후 1년간 밀수·밀입국 등 국제범죄 단속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단속실적을 보면 총 33건에 9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나, 양 기관은 국제범죄에 탄력적 대응하고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와 일선 실무 부서간 구축된 컨택 포인트(Contact Point)를 통해 정보공유·합동수사·장비이용 등 공조 수사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관세청뉴스, 2005. 6. 30). 이밖에 해상밀수 대처를 위한 관세청과 지방 해양수산청과의 양해각서 체결(관세청뉴스, 2005. 4. 19), 테러물품 밀반입 등의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항만세관과 지역 관할 육·해군(레이더 기지 등)간 양해각서 체결(관세청뉴스, 2005. 4. 20),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수입자의 수입신고수리 전 무단반출 차단 등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청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양해각서 체결(관세청뉴스, 2006. 5. 15) 등의 협력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의적인 국경절차 서비스를 협력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교토협약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바, 협력 업체에게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서류없는 행정(No Paper Office) 서비스를 확대하여 범규 준수도(Compliance)를 높여나가야 한다. 아울러 해외 여행자에 대한 관리체계도 개선하여 시민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APIS :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뿐만 아니라 승객예약정보(PNR : Passenger Name Record)도 활용하여 국경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우범자에 대한 집중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착시켜 증가하는 출입국자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sup>69)</sup>

아울러 민간기업과 시민들은 국경절차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정부는 법률로 규정되는 제도적 제약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규제 내용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 민·관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69)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예약자 명단을 미리 확보해 우범 여행자를 보다 쉽게 가려내기 위해서 이르면 오는 2006년 7월부터 항공기 탑승 사흘 전까지 예약된 승객 명단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지금까지는 항공사들이 최종 탑승자 명단만 관세청에 통보하고 있어 막판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끼어든 승객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돼 있다. 관세청은 6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 예약자료 제공 및 이용절차에 관한 고시」를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테러방지와 같은 목적을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입국 선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매일경제, 2006. 5. 16).

## IV. 결 론

자유무역협정(FTA)이 국제경제에 있어서 커다란 조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 발효와 2006년 한-미 FTA 추진 등으로 본격적 FTA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FTA에 따른 무역 자유화와 함께 교역규모 증가, 무역의 복잡화, 전자화 양상이 확산되고 이에 편승하여 국제거래에서 탈법무역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탈법무역 위험성 증가에 대처하여 FTA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불법무역의 유형 및 실태를 분석하고 탈법무역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제도적 대응 모델이 마련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II장에서 불법무역 연구를 위한 분석 틀로서 국경절차(Border Procedure) 모형을 도입하고 불법무역의 주요 범주로 관세범죄(관세포탈 등), 부정무역범죄(지적재산권범죄, 원산지표시위반범죄 등), 마약범죄(마약밀수입 등), 사회안전범죄(테러용물품 밀수입, 전략물자 밀수출 등)를 설정하였으며 III장에서는 FTA 시대 한국의 무역환경으로서 세계 FTA의 추세 및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그에 따른 탈법위험을 살펴보았다.

이어 IV장에서는 앞서 설정된 불법무역의 범주에 따라 최근의 관세범죄, 부정무역범죄, 마약범죄, 사회안전범죄 현황을 개관하고 이어 불법무역의 심층적 실태분석으로 관세범죄를 다루었으며 마지막 제도적 대응방안에서는 불법무역 대응체계 제도화의 기본구상과 불법무역 대응체계의 주요 정비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공식적 제약(formal constraints)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약(informal constraints)을 포괄하는 노스의 넓은 의미의 제도 개념을 원용한데 기초하여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를 “범죄대응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식적인 법규와 조직, 구조화된 절차 및 관행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본 연구가 제시한 범죄대응체계 제도화의 기본구상은 불법무역범죄 등 문제 발생과 쟁점의 확인(identification), 법규와 조직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 설계(institutional design), 범죄대응을 위한 절차 및 관행을 제도화하는 집행(implementation), 그리고 환류(feedback)에 의한 순환과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과정에 경찰청과 유관기관, 민간기업·시민 등 현실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조가 범죄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가능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입장을 범죄대응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또 이러한 불법무역 대응체계의 기본 구상 아래 주요 정비 방향으로는 법규 정비 측면에서 관련 법규정의 명확화, 조직 정비 측면에서 국경절차 관리기관의 통합성 추구, 대응절차 측면에서 종합적 범죄정보시스템 구축, 이해당사자간 협력 측면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의 형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빈발하는 위조상품 등 상표법 위반물품 밀수와 사이버밀수 등 새로운 쟁점 영역의 불법무역이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불법무역 범주화와 대응방안 구상을 계기로 향후 새로운 영역의 불법무역 차단을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_\_\_\_\_ 외사관리관실(2005. 11), 『국제범죄』 제62호.
- 경찰대학(2005), 『치안정보론』.
- 관세청(2003. 4), 『Cyber 관세 형법』.
- \_\_\_\_\_ (2006. 1), 『2005년도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 \_\_\_\_\_ (2006. 3), 『2006년 2월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 김난도(1997), 「신제도경제학에서의 제도개념과 정책연구」, 『한국행정학회보』 제6권 1호, 한국정책학회.
- 김석준 외(2002), 『거버넌스의 정치학』, 법문사.
- 김영춘, 「원산지제도의 쟁점과 대응 방향」, 『관세와 무역』 2005년 5월호, 한국관세무역연구원.
- 무역연구소(2006. 1), 『2005년 세계 FTA 추진 동향 및 2006년 전망』, 한국무역협회.
- 문규석(2003), 「인터넷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실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9집,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 박기륜(2004), 『국제범죄론』, 비전캐릭터.
- 박노섭(2006. 6. 26), 「경찰수사의 독립성 확보방안」, 『경찰수사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방안』 세미나 자료집,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 박주원(2004), 『범죄정보체계론』, 수사연구사.
- 사범연수원(2005), 『경제범죄론』.
- 성완진(2005), 「우리 정부의 FTA 추진현황과 전망」, 『관세와 무역』 2005년 9월호, 한국관세무역연구원.
- 손동권(2006. 6. 26),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경찰수사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방안』 세미나 자료집,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 오웅탁, 김진섭(2003). 「무역원활화와 사회안전의 조화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 정재완(2005), 「국경절차에 대한 가치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 정재호(2006), 「FTA 시대 관세행정 변화에 대한 바람」, 『관세와 무역』 2006년

- 1월호, 한국관세무역연구원.
- 정재화(2005), 『세계 FTA 추진현황과 우리의 대응』, 『관세와 무역』 2005년 9월호, 한국관세무역연구원.
- 조규철(2002), 『한국경찰의 국제범죄 대응능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외사경찰 조직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훈(2003), 『FTA 필요성과 우리의 자세』, 『관세와 무역』 2003년 10월호. 한국관세무역연구원.
- 황준성(2003), 『이행기경제 분석에 있어 거래비용경제학의 적용』, 『비교경제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비교경제학회.
- Arrowsmith S.(2003),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 The Objectives of Regulation and the Boundari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Journal of World Trade* 37.
- EC(1989). *COST 306 Final Report*.
- Eggertsson, T.(1990), *Economic Behavior and I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alambides, H. and Londoño-Kent, P.(2002), *Impediment to Free Trade : The Case of Trucking and NAFTA in the U.S. - Mexican Border*, Mimeo Erasmus University.
- JETRO(2002), *Report on Market Access to Japan : Single Windows for Trade and Port-related Procedures*.
- North, D. C.(1990),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2003. 8). *Trade Facilitation : The Benefits of Simpler. more Transparent Border Procedures*, Policy Brief
- OECD(2003. 10). *Doha Development Agenda : Welfare Gains from Further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with Respect to Tariff*. Document TD/TC/WP, 2003 10/FINAN
- Ostrom, E.(1986), "An Agenda for the Study of Institutions", *Public Choice*, 48.
- Rhodes, R.A.(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CUSTOMS OVERSEAS NEWS, 2006. 1. 26, 2. 9.

<http://www.customs.go.kr>(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joins.com>(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www.kcni.or.kr>(한국관세무역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ta.net>(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news.go.kr>(국정브리핑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연합뉴스 홈페이지)

## Abstract

### A Study on Illegal Trade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 in the FTA Era : With Focus on the Customs Crime

Chung, Woong Ph. D.  
Police Science Institute

Korea is faced with the tendency of Free Trade Agreement(FTA) on a global scale, which has been already realized with the effectuation of Korea-Singapore FTA and Korea-Chile FTA, and the promotion of Korea-U.S FTA. However, the deepening of FTA is ineluctably attended with a high risk of illegal trad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Now it is time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illegal trade and to figure for it.

So this study made use of Border Procedure Model as a analytical framework and categorized illegal trade into customs, unfair trade, narcotic, and security crime. Moreover, it made a general survey of categorized illegal trades and in special measure inspected the present status of customs crime minutely.

As a scheme for crime response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it suggests an institutionalization model and governance conception which comprises issue identification, institutional desig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nd feedback. To put it more concretely, the suggestion comprehends the accuracy of law and prescription, the integration of the border procedure bureaus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It brings forward the building of total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mong

the interested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s well.

**Key Words** : illegal trade, institutional countermeasure, FTA, Border Procedure Model, crime response system, governance, institutionalization.

책임연구보고서 2006-07

## FTA 시대 불법무역과 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범죄를 중심으로

---

2006년 12월 발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1길 29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